

보건복지인과

행복세상의 파트너 **KOHI**



보건복지 인재양성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국가 보건복지 인재양성의 허브(Hub)로서 글로벌 선도기관(Global Top)이 된다.



- 창 의 : 자율적인 혁신으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한다.
- 열 정 :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최고의 가능성에 도전한다.
- 소 통 :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꿈을 응원한다.



넓게보는 전문인, 도전하는 창조인,
열정적인 실천인, 열려있는 소통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한국자활연수원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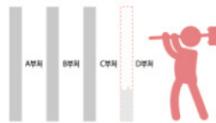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정부3.0



공공정보 공개확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민의
정부정책 참여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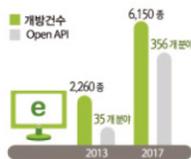
정부 내 칸막이 제거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제고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보공유와 디지털협업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구현



창업과 기업활동
지원 강화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KOHI 사이버교육 및 모바일교육 안내

교육대상 보건-복지-자활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교육과정 보건-복지-자활-인문소양 분야 등 약 100과정

교육일정 연중 운영

- 신청기간

· 사이버교육과정 : 매월 1일~10일(10일간)

· 모바일교육과정 : 매월 1일~21일(21일간)

- 학습기간 : 매월 1일~21일(21일간)

· 신청과 동시에 학습가능



모바일교육 홈페이지

신청절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cyber.kohi.or.kr>

인정시간 - 과정별 2차시당 1시간 인정

· 인문소양 모바일 과정의 경우, 동영상 재생시간 기준으로 상시학습시간 인정

수료기준 - 학습진도율 90% 이상, 최종평가 60점 이상

- 최종평가 없는 경우, 학습진도율 100%





제1기 종사자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2016년 자활종사자 자활지원 정책교육”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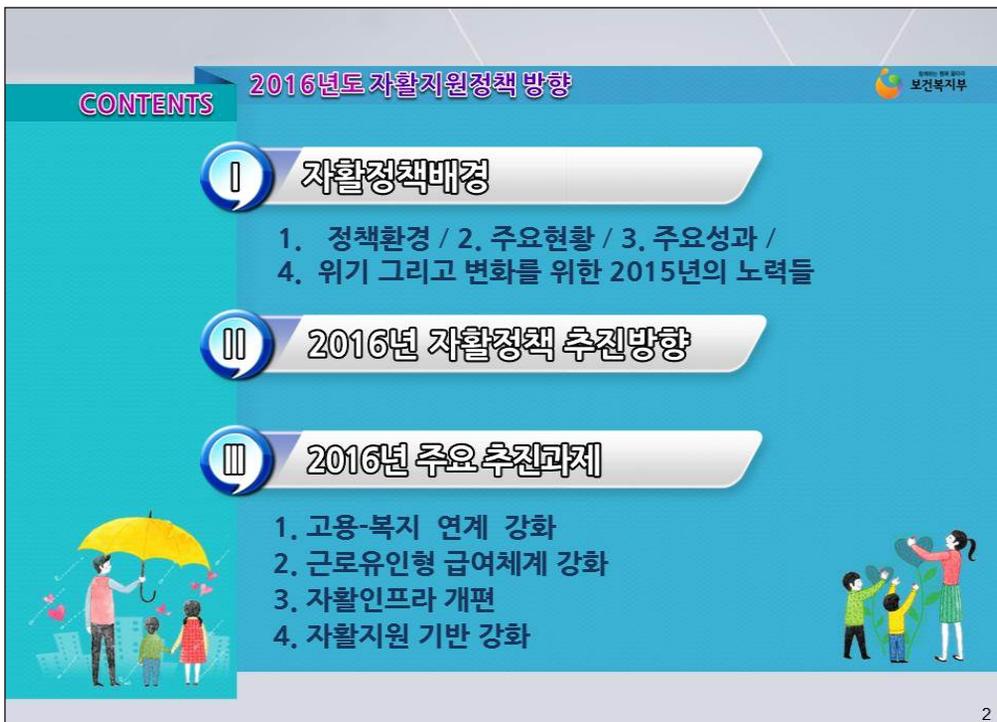
I / 2016년 자활지원 정책방향	1
정연희 서기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II / 2016년 자활사업안내 주요개정내용	19
서은경 주무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III / 근로능력평가, 자활기업	35
정용구 사무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IV / 자산형성지원사업	49
V / 자활인프라 운영관리	59
이효진 주무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VI / 자활정보시스템 사용안내	73
류근철 차장 [중앙자활센터]	
VII / 성과를 높이기위한 개인별 동기부여 전략	87
권종희 소장 [글로벌NPL코칭]	



제1기 종사자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2016년 자활지원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정연희 서기관



보건복지부

CONTENTS

2016년도 자활지원정책 방향

I 자활정책배경

1. 정책환경
2. 주요현황
3. 주요성과
4. 위기 그리고 변화를 위한 2015년의 노력들



3

1. 정책 환경

고용-복지 연계의 필요성 증대

- ◎ 사회양극화, 실업 등 근로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고용 연계 필요성 증대
- ◎ 고용-복지 연계는 현 정부의 핵심 아젠다

대통령님 말씀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가 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도 가능합니다."

-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 '13.1.28 -

4

1. 정책 환경

고용중심의 고용-복지 연계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 '희망리본사업의 고용부 이관', '고용센터 중심의 고용복지+센터 추진 등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상당수가 고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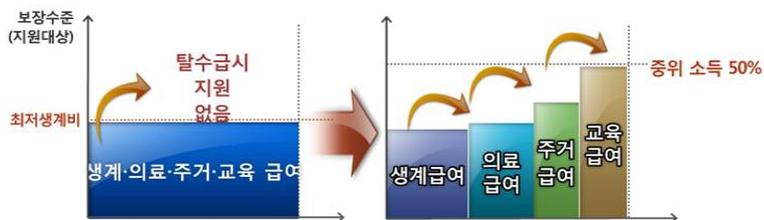
5

03

1. 정책 환경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수급자의 탈수급 유인 효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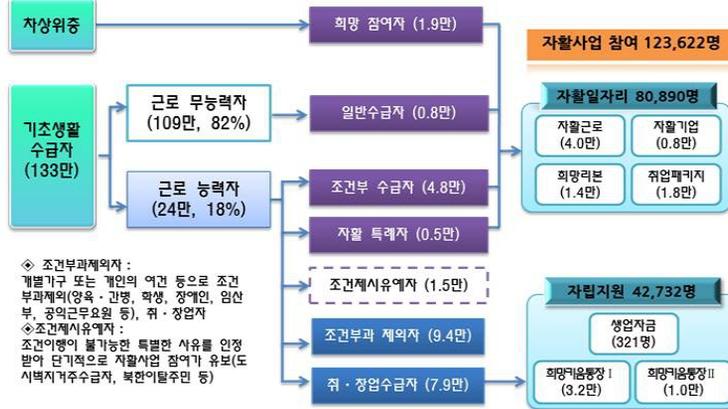


- 자활 주요 정책대상이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6

2. 주요현황

자활사업 참여 현황 (2014년 말 기준)



2. 주요현황

2016년 자활사업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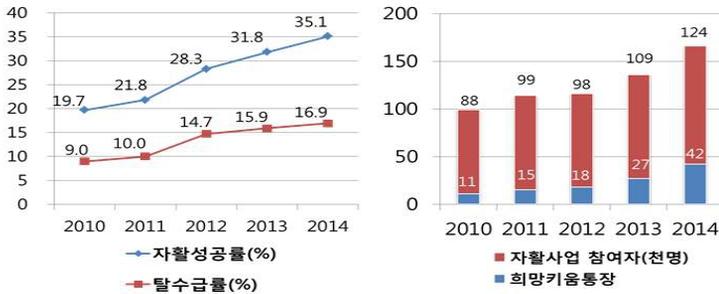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	주요명세
계	448,075	459,669	11,594	2.6	인건비 등 단가 3% 인상
자활사업	316,154	328,573	12,419	3.9	-
-자활근로	314,803	327,285	12,482	4.0	'16년 50명당 수준 지원 예정(전년동)
-자활사례관리	1,051	1,188	137	13.0	60→77명(17명 증원)
-자활통계시스템 선진화	300	100	△200	△66.7	근로빈곤층 빈곤실태 조사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50,276	51,412	1,136	2.3	중앙 : 전년동 지역 : 청소년자활 전역 삭감, 3개소 신규 추가 연수원 : 시설개선비 증액(530백만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전년동
자활사업관리	177	165	△12	△6.8	
생업자금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	768	689	△79	△10.3	'16년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폐지 생계비융자 이차 및 손실보전금(509백만원)과 통합
자활장려금	15,000	0	△15,000	△100	EITC 와 중복조정으로 자활장려금 폐지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	55,556	67,847	12,291	22.1	희망키움통장 I:신규 5천 가구 희망키움통장 II:신규 20천 가구 내일키움통장 신규도입:5천 가구 (기준 가입가구에도 내일근로장려금 신규 지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운영	10,144	10,983	839	8.3	인건비: 3% 인상 및 승중(23명) 운영비 3.9% 증액

3. 주요성과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향상

- ◎ 자활사업 수혜자 확대, 대상별 프로그램 다양화(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 인프라 확충 등으로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지속적 향상



9

3. 주요성과

자활성공률 및 탈수급률 향상

- ◎ 특히,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탈수급률 성과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희망키움통장 1가입가구의 36.2%가 탈수급하였으며, 올해 만기가 도래한 2012년 가입가구의 탈수급률은 약 70% 수준

〈 희망키움통장 1 가입가구 해지 현황('15.9.30. 기준) 〉
(단위:명)

(단위 : 가구)	가입가구	해지 현황			해지 진행중
		소계	탈수급 해지	지급요건 미충족해지 (중도해지 포함)	
'10년	10,698 (100%)	10,693	7,135 (66.7%)	3,558 (33.3%)	5 (0.1%)
'11년	4,093 (100%)	4,085	2,821 (68.9%)	1,264 (30.9%)	8 (0.2%)
'12년 (1기)	1,318 (100%)	1,286	909 (70.7%)	377 (29.3%)	32 (2.4%)

10

3. 주요성과

자활프로그램 다양화

- ◎ 성과중심 자활사업 : 희망리본 사업 도입. 확대(2009년~)
 - '09) 2천명 ⇒ '10) 3.2천명 ⇒ '11~'12) 4천명 ⇒ '13) 10천명 ⇒ '14) 12천명
- ◎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확대(2009년~)
 - '09) 2천명 ⇒ '10) 2.5천명 ⇒ '11) 7천명 ⇒ '12) 9천명 ⇒ '13) 15천명
- ◎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도입. 확대
 - '10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I 도입 :
('10) 10천 ⇒ '11) 15천 ⇒ '12) 18천 ⇒ '13) 27천 ⇒ '14) 32천가구(누적)
 - '13년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도입 : ('13) 5천 ⇒ ('14) 7천명(누적)
 - '14년 일하는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II 도입 : ('14) 10천가구(누적)

3. 주요성과

자활인프라 확충

- ◎ 한국자활연수원 개원, 운영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앙자활센터 컨소시엄 구성으로 '15년 4월 개원, 운영
 - 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활참여자 및 실무자, 공무원 역량강화는 물론,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분야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 수행
- ◎ 광역자활센터 확대
 - ('07) 3개 ⇒ ('08) 6개 ⇒ ('09) 7개 ⇒ ('13) 10개 ⇒ ('14) 14개

4. 위기 그리고 변화를 위한 2015년의 노력들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위기 지속

- Ⓢ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되는 조건부 수급자 수 감소*, 근로능력 미약자 비율 증가, 자활참여기간 제한 적용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어려움

※ 조건부와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정,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 등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자활근로 의무 참여자 감소
- Ⓢ 자활사업 대상계층이 중위소득 50%로 확대되면서 수요자의 욕구는 다양화, 자활근로 사업의 경직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 1일 8시간 근로 기준, 5대 표준화사업 중심의 한정된 자활사업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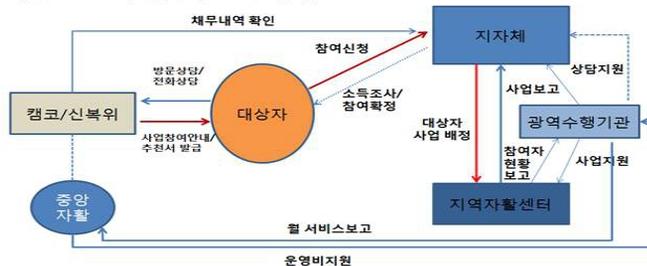
4. 위기 그리고 변화를 위한 2015년의 노력들

2015년의 새로운 시도들

-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

- (대상)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

- (프로그램 내용) ①자활 일자리 제공, ②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③채무조정 지원을 통한 부채해소



4. 위기 그리고 변화를 위한 2015년의 노력들

2015년의 새로운 시도들

◎ 자활 사례관리 강화

- 자활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246개 지역자활센터 배포(8월)
- 자활연수원을 통해 총 21회의 자활사례관리 교육 실시
- 자활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 및 컨퍼런스 개최(11월)를 통한 사례관리 전문성 공유 기회 확대

4. 위기 그리고 변화를 위한 2015년의 노력들

2015년의 새로운 시도들

◎ 자활 정보시스템 구축

- 자활사업 전제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산 기반 마련
- 매출회계의 투명성 확보, 신뢰성 있는 자활 통계 산출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CONTENTS

2016년도 자활지원정책 방향

2016년 자활정책 추진방향



17

2016년 자활정책 추진방향

비전	국민행복			
목표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추진방향	대상 확대, 다변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중위 50% 이하 근로빈곤층 대상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 지원	
추진과제	고용·복지 연계 강화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강화	자활인프라 개편	자활지원 기반 강화
	▶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전달체계 연계 강화 ▶ 맞춤형 자활지원	▶ 맞춤형 급여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강화 ▶ 자활참여자의 취창업 유인 강화	▶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제 도입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및 기능개편 지속추진	▶ 자활연수원 내실화 ▶ 자활정보시스템 안정화

18

CONTENTS

2016년도
자활지원정책 방향

2016년 주요 추진과제

1. 고용-복지 연계 강화
2.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강화
3. 자활인프라 개편
4. 자활지원 기반 강화



10

19

1. 고용-복지 연계 강화

1-1.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전달체계 간 연계 강화

- ◎ 조건부과제외자 범위 축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양육·돌봄, 일용직 근로자 등 조건부과제에서 제외되었던 수급자도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6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침개정(하반기)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 개발 중(복지부, 고용부)
 - ➔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20

1. 고용-복지 연계 강화

1-1.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전달체계 간 연계 강화

- 음면동 주민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고용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 긴급복지, 맞춤형 급여, 차상위 사업 등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자·수혜자에 대해 고용지원 필요성 판단 후 시군구 자활담당 및 고용복지+센터 복지팀으로 연계



21

11

1. 고용-복지 연계 강화

1-2. 맞춤형 자활지원 강화

- 자활사례관리 지속 강화**
 - (자활사례관리사업 수행기관 재정비) 기존 60개 센터 중 사례관리 기능에 충실하지 않은 센터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제외*, 신규 수행기관 공모 실시
 * 2015년 점검결과, 개선 보완 보고서 등을 통해 최종 결정 예정
 - (자활사례관리자 자격요건 및 급여체계 합리화) 기본적인 자격 요건 정비, 경력 등 고려한 급여체계 확립
 - (자활사례관리 매뉴얼 지속 보완, 교육 강화) 대상자 특성별 자활사례관리 매뉴얼 보완, 자활사례관리 교육과정 교육 대상별 세분화

22

1. 고용-복지 연계 강화

1-2. 맞춤형 자활지원 강화

-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속 추진
 - 시범사업 추진실적 분석 등을 토대로 금융위와 합동평가 추진
 - 시범사업 사업평가를 통해 전국 확대방안 마련

2. 근로 유인형 급여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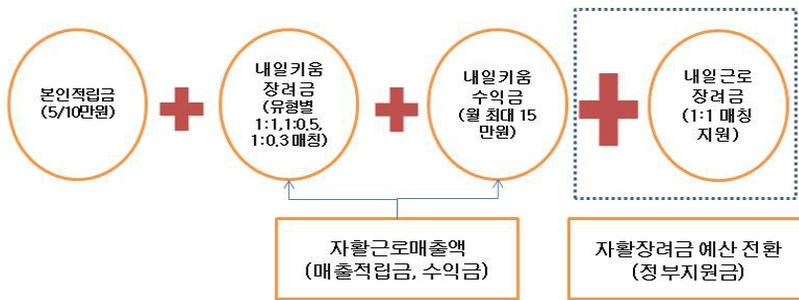
2-1. 자활참여자의 취창업 유인 강화

- ◎ EITC 중심의 근로유인 체계 정립
 -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장려금 제도 폐지, EITC를 기초수급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근로유인체계 합리적으로 개편
- ◎ 내일키움통장 지원 강화
 - 자활근로 매출액 만으로 지원하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액을 추가로 지원 (5 or 10만원, 1:1 매칭지원)
 - 자활사업단 매출액 미발생 사업단 참여자까지 가입대상 확대

2. 근로 유인형 급여체계 강화

2-1. 자활참여자의 취창업 유인 강화

〈내일키움통장 추가 지원 내용〉



25

13

2. 근로 유인형 급여체계 강화

2-2. 맞춤형 급여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

- (희망키움통장 1, 2) 가입자격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단 매출액 미발생 사업단 참여자까지 가입대상 확대



26

3. 자활인프라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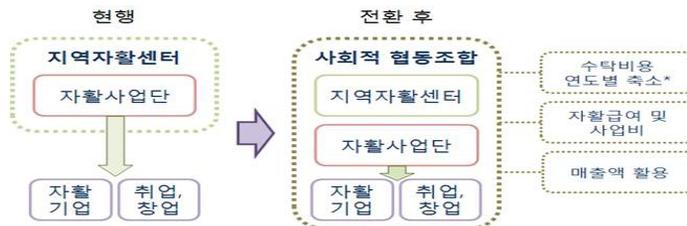
3-1.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제 도입

- ◎ 15년간 지정제로 운영되어 온 지역자활센터에 성과계약제 도입, 일자리 제공만이 아닌, 실질적인 자립지원체계 강화
- ◎ 모든 지역자활센터와 복지부 간 성과계약 체결하여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기반 마련('16.1월~)

3. 자활인프라 개편

3-2.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및 기능개편 지속 추진

- ◎ 저소득 취약계층의 정부재정 일자리 참여 후 계속 고용 유도를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직접고용이 가능한 법인 형태로 전환 지원
- ◎ 컨설팅 지원 등으로 전환기관 총 10개소 추가('16. 상반기)



4. 자활 지원 기반 강화

4-1. 한국자활연수원 내실화

- ◎ **교육관련 연구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
 - 자활·자립지원분야 체계적 교육연구 계획 수립 및 연구 수행
 - 현장 교육지원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 ◎ **현장수요를 반영한 차별성 있는 교육운영**
 - 문제해결중심 교육 및 종사자 자격과정 개발 등 자활현장 역량 강화
 - 자활센터 신규종사자, 센터장, 실장을 위한 직급별 핵심과정 도입
- ◎ **연수지원 체계화 및 지역사회협력 강화**
 - 연수원 인지도 제고 및 교육홍보를 위한 SNS 등 활성화
 - 시설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29

15

4. 자활 지원 기반 강화

4-2. 자활정보시스템 안정화

- ◎ **2016년 6월까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자활정보시스템 병행 사용**
- ◎ **자활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폭적 지원, 모든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정보시스템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
 - 중앙자활센터 시스템 전문인력 5명 보강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시스템 사용 교육 지속 실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불평 사항에 대한 시스템 보완 실시

30

감사합니다





제1기 종사자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2016년 자활사업안내 주요개정내용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서은경 주무관



1. 2016년 자활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	주요명세
계	448,075	459,669	11,594	2.6	인건비 등 단가 3% 인상
자활사업	316,154	328,573	12,419	3.9	-
-자활근로	314,803	327,285	12,482	4.0	'16년 50천명 수준 지원 예정(전년동)
-자활사례관리	1,051	1,188	137	13.0	60→77명(17명 증원)
-자활통계시스템 선진화	300	100	△200	△66.7	근로빈곤층 빈곤실태 조사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50,276	51,412	1,136	2.3	중앙: 전년동 지역: 청소년자활 전역 삭감, 3개소 신규 추가 연수원: 시설개선비 증액(530백만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전년동
자활사업관리	177	165	△12	△6.8	
생업자금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	768	689	△79	△10.3	'16년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폐지 생계비융자 이차 및 손실보전금(509백만원)과 통합
자활장려금	15,000	0	△15,000	△100	EITC 수급가능성을 이유로 자활장려금 폐지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55,556	67,847	12,291	22.1	희망키움통장 I: 신규 5천 가구 희망키움통장 II: 신규 20천 가구 내일키움통장 신규도입 5천 가구 (기존 가입가구에도 내일근로장려금 신규 지원)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운영	10,144	10,983	839	8.3	인건비: 3% 인상 및 순증(23명) 운영비 3.9% 증액

2. 자활사업 참여 자격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참여자 범위

- ◎ 자활근로 참여자 범위
 - (조건부 수급자) 근로능력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소득으로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경우
 -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3. 근로능력 판정 관련 기준 개선

근로능력 판정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

- ◎ 희귀난치성질환 중 일반결핵 환자 근로능력평가 유예기간 조정 (5년→ 2년)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사항
- ◎ 판정 유효기간 2년 판정 요건인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개정
 -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4. 조건부과제외 및 조건제시유예 기준 개선

미취학 자녀 양육 관련 조건부과 제외 기준

- ◎ 조건부과제외 기준 “미취학 자녀” 요건에 ‘다자녀 양육 특혜’ 신설
 - ➔ **사회서비스 수혜여부(보육료, 유아학비지원, 아이돌보미 등) 상관없이 조건부과제외**
 - ※ 단, 셋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미취학 상태인 기간만 적용
- ◎ 장애아동 양육가구의 경우도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 상관없이 조건부과 제외

5

21

4. 조건부과제외 및 조건제시유예 기준 개선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자 자활근로 참여중지 방안

- ◎ (문제점)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업단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본인이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대안 필요
 - ➔ (개정 내용)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을 사유로 불성실한 참여가 반복되는 경우 자활기관협의체의 결정으로 참여중지 및 조건부과 제외 가능

6

5. 자활근로사업 운영 개선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 ◎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단가(실비제외)를 '15년 대비 약 3.3% 인상
(단위 : 원/일)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액(률)	비고
시장진입형	33,770	34,880	3.3%	1일 8시간
복지·자활 도우미형, 인턴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30,270	31,270	3.3%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21,800	22,550	3.4%	1일 5시간

5. 자활근로사업 운영 개선

Gateway 과정 참여자 급여 지급의 형평성 제고

- ◎ (문제점) '출석일' 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성실참여자와 불성실참여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 (개정 내용) Gateway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참여자가 1일 3시간 미만 참여할 경우 급여의 50%만 지급하도록 개정

5. 자활근로사업 운영 개선

자활근로사업 최대 참여기간(36개월) 만료에 따른 개정 - 공통사항

- ◎ (유형변경) 사업단 유형 변경시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능
 - ※ 매출액 변동으로 인한 사업단 유형변경 → 인정
 - 인턴·도우미형 내에서의 유형변경 → 불인정

-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최대 참여기간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통장 가입기간 만료 시까지 자활근로 참여 가능
 - ※ 중도 해지시 자활근로 참여기간도 종료

9

23

5. 자활근로사업 운영 개선

자활근로사업 최대 참여기간(36개월) 만료에 따른 개정 - 수급유형별

- ◎ (조건부수급자)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실시 지역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 구분
 - ➔ (실시지역) 취성패 사전단계 의무참여
 - ※탈락 및 미취업으로 지자체 자활근로 제외되시 참여기간 재산정
 - ➔ (미실시지역) 자활역량평가 재실시하여 자활근로 또는 취성패 재배치

- ◎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 참여종료 원칙이나 취성패 과정 참여 하도록 안내
 - ➔ 자활참여 종료 1년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일 경우 재참여 가능

10

5. 자활근로사업 운영 개선

기타급여 및 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 주차수당

- ⊙ (주차수당) 주중 참여 시작할 경우 주차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 (기존) 출근일부터 기산하여 1주일(5일) 개근시 지급
 - ⇒ (문제점) 참여자별로 주차수당 기산 시점이 달라 복잡함
 - ➔ (개정) 해당주의 잔여일 동안(실제근로일 1일 이상) 개근시 지급하며, 그 다음주부터는 일~토로 계산하여 지급
 - ※ 주중 참여 종료하는 경우도 종료일까지 개근시 지급 (단, 자활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주중에 재참여하는 경우 첫 주는 주차수당 미지급)
- ⊙ (주차수당) 전년도 마지막 주와 당해연도 첫 주가 하나의 주를 이룰 때
 - ➔ 하나의 주로 보고 주차수당 지급

5. 자활근로사업 운영 개선

기타급여 및 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 월차수당

- ⊙ (월차수당) '월차휴가'와 '월차수당'으로 용어정리
 - ➔ 월차 발생(X), 월차수당 발생(X) ⇒ 월차휴가 발생(O)
 - 월차 사용(X), 월차수당 사용(X) ⇒ 월차휴가 사용(O)
 - 월차 지급(X) ⇒ 월차수당 지급(O)
- ⊙ (월차수당) 월차수당 중간정산 삭제(연1회 정산으로 개정)
 - (문제점) 기존 중간정산으로 계획적인 월차휴가 사용 곤란
 - ➔ (개정) 연1회 연도말 정산하여 지급하되, 6일 초과한 월차휴가는 월차수당으로 지급 불가함을 분기마다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

5. 자활근로사업 운영 개선

기타급여 및 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 기타

- ◎ (지각·조퇴) 지각·조퇴시 주차수당 및 월차휴가 발생기준 단순화
 - (기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의 경우 월3회 범위 내에서 주차수당 및 월차휴가 발생
 - ⇒ (문제점) '월3회' 계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여 혼란 초래
 - ➔ (개정) 사유 불문하고 1주에 8시간 이상 지각·조퇴시 해당 주의 주차수당 미발생

13

25

5. 자활근로사업 운영 개선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비 사용 가능화

- ◎ (기존) 자활근로사업 유형 중 '인턴형'만 사업비 없음
 - ➔ (개정)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비 10%이내 사용 가능
 - * 인건비 : 사업비 = 90 : 10

자립성과금 분기 중간 참여시 지급조건 기준 완화

- ◎ 분기 중간 참여시 자립성과금 50% 지급조건인 '실제근로일수 40일'을 '실제근로일수 33일'로 기준 완화

14

6.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관리

사업단 해체 아닌 경우의 물품 매각 처리 방법 명시

㉞ (기존) 사업단 해체시의 물품 매각 처리 방법만 명시

➔ (개정) 사업단 운영 중 물품 매각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중앙 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적립

※ 서울은 4:6, 지방은 7:3의 비율로 적립

연도말 최종정산시 매출적립금 적립하지 못한 경우 충당방법

㉞ 연도말 충당 부족액을 50:50으로 분할하여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에서 최근분기 순서로 충당*

➔ 부족할 경우 둘 중 잔액이 있는 항목에서 충당

※ 최종정산 이후 지급을 위해 남겨놓은 내일키움수익금 30%와 자립성과금10%에서 충당

7. 자활기업지원 기준 등명확화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㉞ (기존) 업종 관련 전문가 인정범위를 '자격보유자'에 국한

➔ (개정) 자격보유자뿐만 아니라 특정분야 업무경력도 포함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 가입 및 성과 입력 주체 명확화

㉞ 자활기업 - 자활기업정보시스템 의무적 가입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기업 사업성과 입력

광역자활센터 - 광역자활기업 사업성과 입력

8.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등

청소년 자활프로그램 사업 종료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사업 폐지에 따라 **경과기간 운영방안 마련**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기관에 대한 평가 재조정

- (기존) 제외 및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적용
 - ➔ (개정) 1년간 유예하고 이후 시범사업 기관 간 성과평가 적용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관련 개정

- 성과계약제 도입 및 격년제 평가 예정
 - ➔ 기존 삼진아웃제는 '16년도 평가('15년 실적)까지만 적용
- 지역자활센터 평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강화

17

27

8.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등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개정 주요내용

- “인정경력의 산정 및 호봉 승급”은 지자체에서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
- ‘직급별 기준 호봉’은 2016년 신규 채용자부터 폐지
- 병가·공가 및 기타 복무규정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하도록 절차 추가

18

8.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등

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자격 기준표” 개정 주요내용

- 학력제한 기준은 폐지하고 경력 및 자격 기준 강화
- (현행)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자 부재 시 신규채용이 아닌 직원 중 승진 시 규정이 없음
 - ➔ (개정) 최소 승진연한 규정 : 1,2급으로 승진 시 각 2년, 3~5급으로 승진 시 각 1년

정근수당, 자격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삭제 후 기본급에 통합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3가지는 존치

광역자활센터의 성과계약 기간 종료 시 재지정 관련

- 광역자활센터의 실질적인 성과계약 운영방안 명기

9. 자활기금 및 기타 폐지 사업

자활기금 용도 추가

-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비용’ 사용 신설 및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항목 명시
- 시장진입형 사업단의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한도 확대 (‘2천만원의 범위 내’ ⇒ ‘5천만원의 범위 내’)

2016년도 폐지 및 이관 사업

-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및 자활장려금 지급) 사업 폐지
- 저소득층(한부모가족 포함) 생업자금융자 사업 폐지
- 주거현물급여 및 주거복지사업 국토교통부 이관

10.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실화 추진

내일키움통장 안정적 운영

- ◎ 정부매칭금(내일근로장려금) 1:1 추가 지원
- ◎ 내일키움통장 가입 제고 독려 위해 가입대상 확대
 - 매출액 미발생 사회서비스형 및 인턴·도우미형도 가능
- ◎ 자활근로 참여기간과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 동일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통장 유지기간 또는 만기기간까지 자활근로 참여 가능

21

29

10.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실화 추진

희망키움통장 Ⅰ·Ⅱ의 내실화

- ◎ (희망키움통장 Ⅰ) 사용용도 확대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연계 지원
- ◎ (희망키움통장 Ⅱ) 정기 소득확인조사 방식 개선
 - (기존) 연1회 지자체(시군구)를 통한 소득확인 조사
(개정) 행복e음 정기 소득재산확인조사에 포함(연 2회)

22

11.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개정

- ◎ (신청대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용어 개정
 - ➔ (개정)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등(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포함)
- ◎ (대상선정 우선순위 신설)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중 신청자가 많은 경우 대비하여 대상선정 우선순위* 마련
 - * 주거급여 → 차상위 계층 → 교육급여

주거급여 국토부 이관에 따른 개정 사항

- ◎ (기존) 생계·주거급여에서 양곡비 공제
 - ➔ (개정) 생계급여에서만 공제

11.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16년 정부양곡할인 지원단가 인하

-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양곡 판매가격 고시 개정 사항 반영

(단위 : 원)

구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15	'16	'15	'16	'15	'16
신곡 (15년산)	10kg	22,290	16,400	11,100	8,200	11,190	8,200
	20kg	44,410	32,510	22,200	16,200	22,210	16,310

감사합니다.





제1기 종사자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근로능력평가,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정용구 사무관

근로능력판정제도,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정웅구

I 근로능력 판정 제도

1. 법령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1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제2호)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명을 통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제5호)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 근로능력판정 목적 및 결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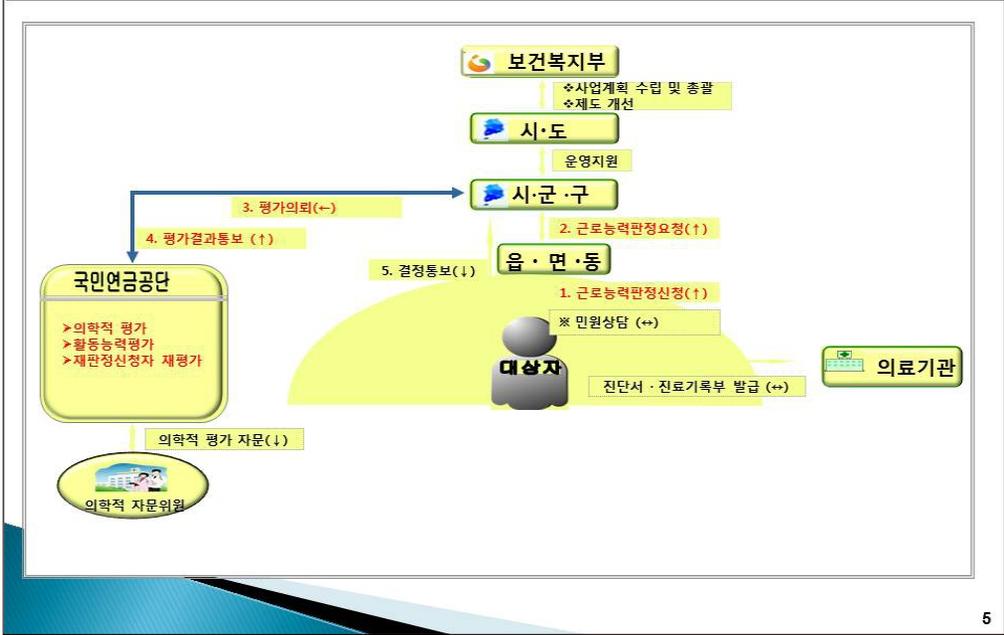
목적

근로능력 유·무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탈수급·탈빈곤 촉진

결과활용

- 생계급여 지급 시 근로조건 부과(자활사업 참여)
- 의료급여 종류 결정
(1종 : 입원비 전액지원, 2종 : 일부 본인 부담)

3. 추진체계



5

4. 근로능력판정 업무처리 절차

절차	수행기관(장소)	주체
① 안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② 근로능력평가 의뢰	시·군·구 → 공단	시군구
③ 평가접수	공단지사	공단 직원
④ 의학적 평가	공단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	자문의사, 공단 직원
⑤ 활동능력 평가	공단 지사(대면심사)	공단 직원
⑥ 근로능력평가 결과 통보	공단 → 시·군·구	공단 직원
⑦ 근로능력 판정	시·군·구	시군구
⑧ 근로능력 판정결과 통보	시·군·구 → 기초수급자	시군구

6

5. 근로능력 판정 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015년도 기준 197천명) * 2016년 기준 (18세/1998년 생, 64세/1951년 생)

★ 판정 제외재(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서 군·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2. 근로가 곤란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 국가유공상이등급 3급 이상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만 해당) 등록자

6. 근로능력 판정 유형

구분	내용
① 신규평가	· 기존 수급자 중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 및 신규 수급권자가 근로능력 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② 정기평가	·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 도래 예정자에 대한 평가
③ 직권평가	·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해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④ 재평가	· ①~③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재판정을 신청한 경우

7. 근로능력평가(공단)

<p>의학적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검토하여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1~4)를 결정
<p>활동능력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이 평가대상에 대한 면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시의 활동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의학적평가 결과가 1~2단계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에 대해 실시 • 활동능력 간이평가는 평가항목 중 중요한 항목 3개를 대상으로 평가 * 간이평가 결과 3.0점 이하 시 전체평가 제외

8. 근로능력 평가 방법(1)

근로능력평가(공단) : 의학적평가 → 활동능력평가(간이평가) → 전체평가)

<p>의학적 평가</p>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
	<p>대상 질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등 11개 질환군
	<p>평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고착으로 평가 • 평가대상 질환별 단계는 고시의 의학적 평가기준(1~4단계)에 따라 결정 • 동일한 평가대상 질환내에서는 1개의 질병만을 평가, 각기 다른 평가대상 질환이 2종류 이상이더라도 근로수행 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개의 질병만 평가 * 2종류의 질병 모두 의학적 단계가 인정되는 경우 높은 단계보다 1단계 상향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평가대상 질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해당 질병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질환 1개를 선택 평가 • 평가대상 질병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단계외" 로 평가

8. 근로능력 평가 방법(2)

근로능력평가(공단) : 의학적평가 → 활동능력평가(간이평가) → 전체평가

활동 능력 평가	목적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함
	평가 항목	• 체력, 만성적 증상, 알코올의존이상 간이 평가항목, 취업가능성, 자기관리, 집중력, 근로의욕, 자기통제, 대인관계, 이해력, 기초학습 활용능력, 공간 지각력, 습득력, 대처 능력 및 동시 업무수행 능력 등 15개 항목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간이평가 → 전체평가 순서로 진행 • 면접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관찰평가, 상황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른 점수 부여 • 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별로 0점에서 4점 중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1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 총점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II

자활기업

1. 법령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지자체 사업의 우선위탁, 국가·지자체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대상 자활기업)

- ① 법 제18조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의 3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3

41

2. 자활기업의 정의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 하여,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 8. 2.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 설립요건을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14

3.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사업 목적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

추진 방향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을 통해, 개인신용이나 담보력 부족한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창업의 형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차상위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참여자는 관할 시군구 지역 거주자에 국한하지 않음
* 사업실시지역은 관할지역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관할지역 벗어날 수 있음.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기업 사업준비 단계에 참여한 경우에도 조건이행으로 인정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은 단계별 자활경로 프로그램 운영하되 기간설정 등에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4. 자활기업 설립 요건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1인이 창업한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개인 창업으로 관리
- 조건부수급자가 취·창업한 경우 “근로”로 인한 조건부과 제외자로 처리하지 않고,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처리
* 행복e음 자활지원계획수립시 조건부수급자로 처리)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설립 절차에 따름
* (예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5. 지원대상 자활기업 지원 요건

-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참여 수급자의 전출입 등 변동요인에 의해 감소한 경우 1/5까지 인정(해당 자활 기업은 3년 범위 내에서 지원)

- 모든 구성원(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 3월의 수익금 발생현황을 기준으로 자활기업 전환 후 월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이 경우 수익금은 매출액에서 자재비, 제세공과금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 실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임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또는 평균 4일 이상(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 자활근로사업단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을 참여시킬 경우 경영·기술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전체 인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17

43

6. 지원대상 자활기업 지원 절차

- 구비서류

- ①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 ② 사업계획서(최근 3월간의 경영실적 등)
- ③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 ④ 기술, 경영지도 등의 지원 요청서(필요시)
- ⑤ 기타 관련서류

- 시·군·구청장은 자활기업의 지원요건, 사업계획 및 기술지원 등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18

7.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 기간

- 보장기관은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음
- 자활기업 추가 지원기간은 2년(최초 결정일 기준 최대 5년)
- 지원기간 종료 후 보장기관은 자활기업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 이상인 경우 계속 지원 가능
 - 자활기업은 중앙자활센터의 자활기업 등록시스템에 매 분기 실적을 등록
 - 보장기관은 등록실적을 면밀히 검토 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결격사유 발생시 3개월간 보완 기간 부여 후 보완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내용

- ① 자활기업 창업지원 ②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③ 국·공유지 우선 임대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⑥ 수급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⑦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⑧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 기계설비 구입,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 5천만원 까지 지원(사무실 책상, 의자 등 단순비용 제외)
- ⑨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8.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지원 기간

- 수급자(자활특례 포함) : 인건비 지원결정일로부터 6월(최대 5년)
 - * 재원 : 자활근로사업인건비 / 보장기관이 6개월 단위로 인건비 지원 적절성 여부 판단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 자활기업 전환 후 초기 6월간
 - * 재원 :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경산한 수익금(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제외)
-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 창업 후 최대 3년
 - 세무, 회계전문가, 업종관련 전문가(자격보유)로 한정, 자활기업별 월 200만원 한도 지원(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 * 재원 : 자활기금 / 보장기관은 6개월마다 자활기금 활용을 승인 검토

지원 내용

- 인건비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급여)
- 기타 수당 등 : 주차·월차 수당, 실비
- 단, 대상자의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① 수급자(자활특례 포함)
 - (2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수당 지원 금액의 100%
 - (2년초과~5년까지) 인건비 및 기타수당 지원 금액의 50%
 - ②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 초기 3개월 100%, 이후 3개월 50%
 - ③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위 지원기간 내용과 동일)
- 자활기업 구성원의 전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음

9. 자활기업 사후관리

보장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대상과 규모를 결정 ● 재정적으로 건전한 자활기업 육성이 어렵다거나, 지원기간 중 수익금 발생이 원활하여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 ● 인건비의 지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수익성, 재정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 중앙자활센터의 보고자료 확인 후 지원중단 및 지원내역 환수
자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에 의무 가입, 분기별로 사업성과 입력
지역 자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기업의 사업성과를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에 분기별로 등록
광역 자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활기업의 사업성과를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에 분기별로 입력
중앙 자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 익월 25일까지 시군구에 사업성과 통보

21

45

10. 2016년 자활기업 관련 변경 내용(1)

자활기업 설립요건

- ◎ (기존) 사업특성상 사업자등록이 곤란한 경우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
 ➔ (개정)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자활기업 창업지원(자활기업 지원기간 종료 후)

- ◎ (기존) 자활기업 일부 부담을 통해 명의를 자활기업으로 전환
 ➔ (개정)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시설 및 장비는 자활기업 일부 부담을 통해 명의 전환 가능
 * 매출적립금으로 지원한 고가설비(1천만원 이상),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

22

10. 2016년 자활기업 관련 변경 내용(2)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기존) 전문가의 범위 : 세무·회계전문가·업종관련 전문가(자격보유) 한정

➔(개정) 전문가범위 : 세무·회계전문가·업종관련 전문가(자격보유 또는 경력*)로 한정

* ㉠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개별법 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자

10. 2016년 자활기업 관련 변경 내용(3)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 등록

◎(기존)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에 분기별 등록, 중앙자활센터는 분기 익월

➔ 15일 까지 시군구에 통보

(개정) 인정받은 모든 자활기업은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에 가입하고, 분기별로 사업성과 입력

- 광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광역별 지역 및 광역자활기업의 사업성과를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에 분기별 등록

- 중앙 자활센터는 자활기업 사업성과를 분기 익월 25일까지 시군구에 통보

10. 2016년 자활기업 관련 변경 내용(4)

광역자활기업의 인정

- ⊙ (기존)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해당 자활기업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기준' 부합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 ➡ (개정)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해당 광역자활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기준 부합여부, 사업계획타당성,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

25

47

감사합니다.



제1기 종사자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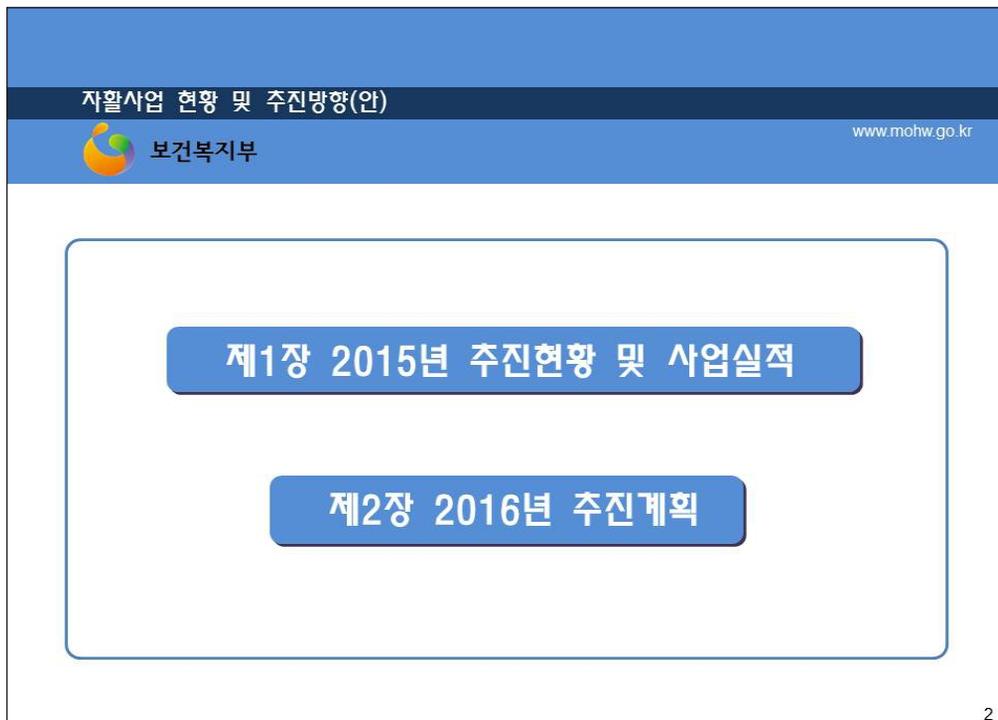
IV



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2015년 추진현황

1 자산형성사업의 개요

-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물질 기반 마련 등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등장)**
 -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0.4월~)
 -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유도 ('13.3월~)
 - (희망키움통장Ⅱ)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 예방 및 중산층 진입 지원을 위해 차상위까지 사업 확대 ('14.7월~)

➔ 근로빈곤층을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기본 틀 완성

5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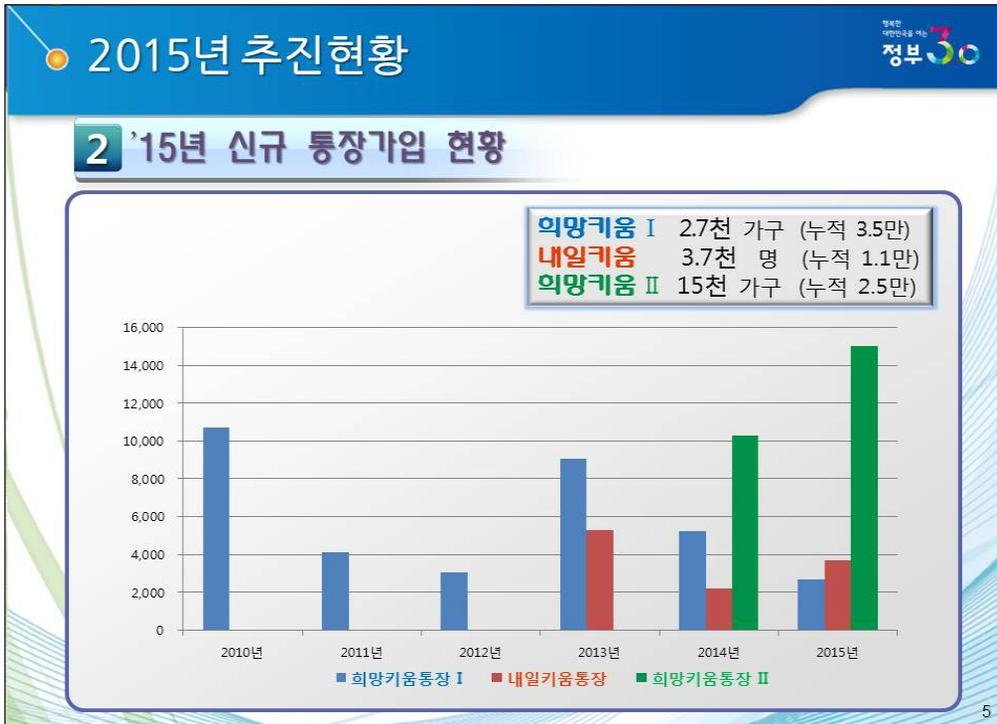
희망사다리

2015년 추진현황

1 자산형성사업 비교 ('16년 기준)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선택)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내일근로장려금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추가 지원액	-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사업단 매출액 활용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증명 의무교육이수)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및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4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적립

4



2015년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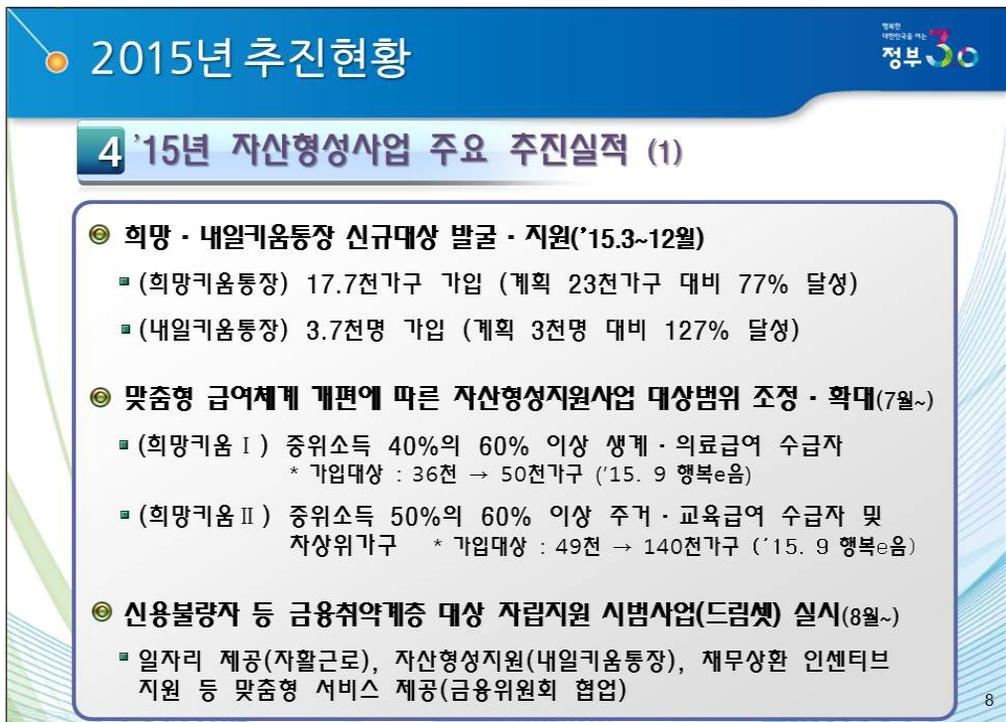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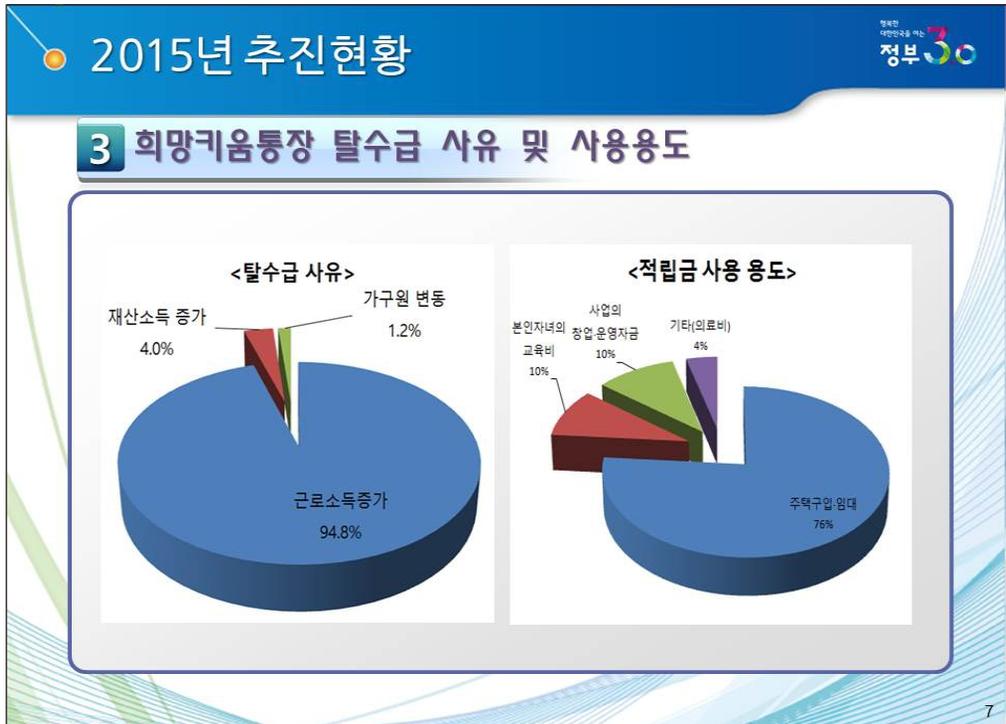
정부 3.0

3 희망키움통장 만기 해지 현황

< '10년 ~ '12년 상반기 가입가구 해지 현황 >

가입연도	가입가구	해지 현황			해지 진행중	
		소계	탈수금 해지 (특별중도해지 포함)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중도해지 포함)		
계	17,837 (100%)	17,575 (99.7%)	11,861 (66.5%)	5,714 (32.0%)	262 (1.5%)	
10년	10,698 (100%)	10,693 (99.4%)	7,135 (70.4%)	3,558 (33.3%)	5 (0.1%)	
11년	4,093 (100%)	4,085 (99.8%)	2,821 (68.9%)	1,264 (30.9%)	8 (0.2%)	
12년	1기	1,318 (100%)	1,286 (95.6%)	909 (70.7%)	377 (29.3%)	32 (2.4%)
	2기	1,728 (100%)	1,511 (87.4%)	996 (57.6%)	515 (29.8%)	217 (12.6%)

6



정부는
국민이
함께
30
● 2015년 추진현황

4 '15년 자산형성사업 주요 추진실적 (2)

- ◎ **근로유인체계 일원화 및 내일키움통장 정부 추가 지원**
 - 근로장려세제(EITC) 기초수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사·중복문제가 제기된 자활장려금 폐지, 근로유인체계는 EITC로 일원화
 - 근로사업단 매출액에서만 지원되던 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에게 정부 매칭금(내일근로장려금) 추가 지원
 - * 본인 저축액(5만원/10만원)에 1:1 매칭 ('16년 65억원 예산 확보)

- ◎ **지자체(자활센터) 컨설팅 실시('15.9-11월 / 30개소)**
 - 대상자 적격여부, 정부·민간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지급해지에 대한 증빙 등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중앙자활센터 협조)

9

정부는
국민이
함께
30
● 2016년 추진계획

1 희망키움통장 내실화

-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계 지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통장Ⅰ, 통장Ⅱ) 대상으로 ISA 상품 연계 지원
 - * 지자체는 통장 지급 해지자가 희망하는 경우, 통장 가입 확인서 발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개요)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하여 비과세하는 제도
- (가입대상)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 (의무가입기간) 5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입자는 3년)

- ◎ **사용용도 확대 및 증빙서류 제출 기한 명확화**
 -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을 사용용도에 포함하고, 증빙서류 제출 기한을 1년으로 명확화

10

2016년 추진계획



2 희망키움통장 II 안정적 운영 (1)

◎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자 발굴 확대

- (협조체계 구축)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고용·복지+센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자 추가 발굴
- (홍보 지속) '16년 모집과 더불어 우수 사례집 및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대상 홍보 강화

* 지역신문, 반상회 및 이·통장, 부녀회 등을 통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병행

※ '16년 2만가구 신규 모집 예정

2016년 추진계획



2 희망키움통장 II 안정적 운영 (2)

◎ 유지 상한 근로사업소득 상향

- (당초) 유지기준 소득상한(통장 I 통장 II) 중위소득 60% (개선) 참여자들의 의욕 고취를 위해 소득상한 상향등 검토

◎ 소득확인조사 개선

- (당초) 연 1회 지자체(시군구)를 통한 소득확인 조사 (개선) 행복e음을 통한 정기 소득재산 확인 조사에 포함(연 2회)

◎ 자립역량교육 주체 명확화

- (당초) 시군구, 민간위탁기관 등 주체별 역할 모호 (개선) 기본 주체는 시군구, 희망키움통장 I 사례관리자 배치지역의 경우 지역자활센터, 추가교육 필요시 시도 협의후 민간위탁기관 개설 가능

2016년 추진계획

3 내일키움통장 확대 및 안정적 운영 (1)

☉ **정부 매칭금(내일근로장려금) 신규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가 매월 5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성실 참여시 매출액에 상관없이 정부 매칭금(1:1) 추가 지원

☉ **자활근로 기관과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 동일**

- 자활근로 기간(36개월, 최대 60개월)이 종료하더라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통장 유지기간 또는 만기 기간까지 자활근로 유지 가능

13

2016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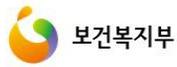
3 내일키움통장 확대 및 안정적 운영 (2)

☉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급요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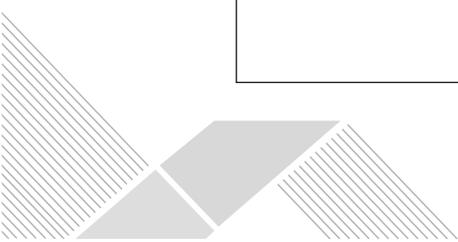
- (가입대상 확대) 매출액 미발생 사업단 및 인턴·도우미형까지 확대
 - * 가입대상 25천명 → 30천명
- (지급요건 완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월 944천원('16년, 창업도 동일 기준)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 등) 창업의 경우 소득세 납세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최저임금 이상 소득과 소속 증명
- (용도 증빙) 사용용도 및 증빙서류 요건에 대해 명확화

14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제1기 종사자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자활인프라 운영관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이효진 주무관

자활 인프라 운영·관리

2016. 1. 26.



목 차

1. 자활지원센터(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
2. 2016년 주요 개정사항
3. 한국자활연수원

1장. 자활지원센터

1-1. 개요

1-2. 중앙자활센터

1-3. 광역자활센터

1-4. 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센터 개요

중앙자활센터

■ 1개소

- 자활사업 정책개발 기반 조성을 통한 자활사업추진 방안 마련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

광역자활센터

■ 14개소

-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 추진
-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지역자활센터

■ 251개소(6개소 신규)

- (지역별) 도시형 125, 도농복합형 57, 농촌형 69개소
- (규모별) 확대형 67, 표준형 124, 기본형 60개소

1장. 자활지원센터

1-1. 개요

1-2. 중앙자활센터

1-3. 광역자활센터

1-4. 지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개요

목적

- 자활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자활사업 지원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주요 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 자활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컨설팅 및 광역단위 자활기업 관리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장. 자활지원센터

1-1. 개요

1-2. 중앙자활센터

1-3. 광역자활센터

1-4.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개요

목적

- 중앙-광역-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사업의 내실 및 자활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형성

주요 사업

-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 지원 및 알선
-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 시·도 단위의 자활자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 시·도 단위의 자산형지원사업을 위탁 운영
- 기타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1장. 자활지원센터

1-1. 개요

1-2. 중앙자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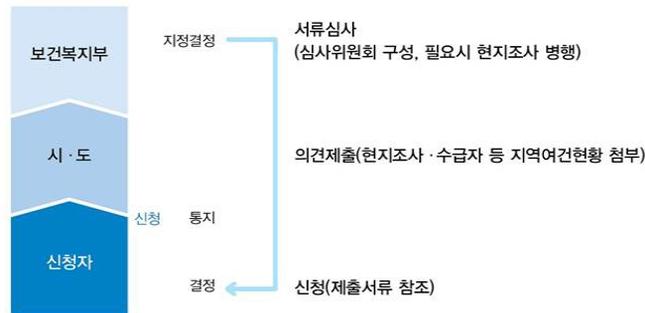
1-3. 광역자활센터

1-4.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정

지정

- 광역자활센터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므로 지정취소가 원칙 변경지정 처리절차는 신규 지정시 방법 및 절차와 동일하게 추진



1장. 자활지원센터

1-1. 개요

1-2. 중앙자활센터

1-3. 광역자활센터

1-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개요

목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주요 사업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1장. 자활지원센터

1-1. 개요

1-2. 중앙자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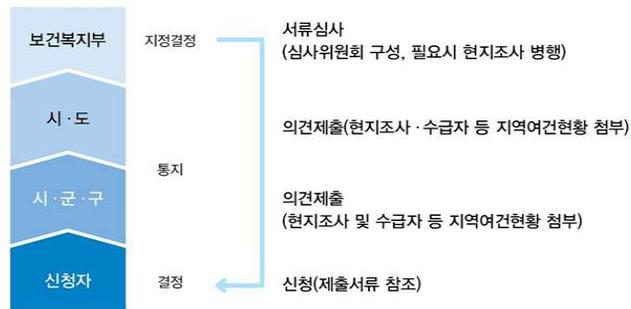
1-3. 광역자활센터

1-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정

지정

- 지역자활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1장. 자활지원센터

1-1. 개요

1-2. 중앙자활센터

1-3. 광역자활센터

1-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 변경

가. 신청 법인 등의 변경

지역자활센터는 양도·양수할 수 없음 → 지정취소가 원칙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운영주체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새로운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단계부터 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서류: 시군구 검토의견서, 지정서 반납 및 반납사유서, 신규 기관의 선정 경과보고서, 조사 의견서, 센터장이력서 등

나. 센터장 변경

운영 법인·단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추천

시군구청장: 변경(교체) 적정성 여부를 최종 처리 후 복지부장관 보고

다. 주소 변경 등 경미한 경우 사유 등을 적시 하여 복지부에 보고

1장. 자활지원센터

1-1. 개요

1-2. 중앙자활센터

1-3. 광역자활센터

1-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

가. 지정취소 대상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자활센터 지정시 부여 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

지도·점검 결과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평가서류 허위 조작 및 보조금 횡령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끼친 기관

나. 지정취소 절차

평가 또는 지도·점검결과 지정취소대상 선정

대상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의견 청취

대상 자활센터 관할 시도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

지정취소 등 결정

장관은 지정취소시 그 사유를 명시 센터장, 시도, 시군구 통지

1장. 자활지원센터

1-1. 개요

1-2. 중앙자활센터

1-3. 광역자활센터

1-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예산 편성

가. 예산·결산의 총괄 관리

(예산편성의 승인) 지역자활센터의 편성된 예산안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 후 보장기관의 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

* 관련 지침 내용 : 예산 중 500만원 이상이 변경된 경우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 (500만원 미만은 사후 보고,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의 제출)

나. 예산의 편성

(세입예산) 국가·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금, 법인전입금, 자활근로 사업비, 자활사업 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기타 수입

(세출예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자활사업단별 지출(자활근로 사업비,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로 구분 관리

(합리적 예산 편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사업계획을 고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적경비율을 유지

1장. 자활지원센터

1-1. 개요

1-2. 중앙자활센터

1-3. 광역자활센터

1-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예산 편성

다. 수입과 지출

(수입의 분류) 보조금 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후원금, 매출액 등 지출은 사전에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 집행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의한 지출 또는 계좌이체 원칙

라. 후원금 관리

후원금 영수증 발급,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 공개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1장. 자활지원센터

1-1. 개요

1-2. 중앙자활센터

1-3. 광역자활센터

1-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 (목적)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을 평가
 (유형별 평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 성과평가 실시
 (평가대상기간) 매년 1.1 ~ 12.31
 (평가지표) 공통지표와 특성화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100점 만점)
 (평가기준) 자활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정도, 센터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결과 활용)
- 자활사업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여 발전방안 마련
 -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 및 인센티브 지원 반영
 - 평가 우수기관 및 종사자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반영 가능
 - 삼진아웃제 적용 ➡ 성과계약(지자체 가산점 10% 부여)

1장. 자활지원센터

1-1. 개요

1-2. 중앙자활센터

1-3. 광역자활센터

1-4.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규모평가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주기) 규모 평가주기 3년('15~'17년)
 (규모 기준) 시군구별 조건부수급자수, 자활센터 참여수급자 등
 '16년 현장이건 청취를 통해 주기 및 기준에 대한 재설정 필요

〈2016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현황〉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251	67	124	60
	255백만원 (7명)	224백만원 (6명)	190백만원 (5명)

2장. 주요 개정사항

2-1. 청소년자활

2-2. 성과평가 도입

2-3. 운영지침

2-4. 광역센터 지정

청소년자활프로그램 종료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기간 운영

- 해당 센터에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련서비스 이관·종료 등 이용 청소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무자 고용승계 유도
- 최대 '16년 말까지 서비스의 이관·종료를 완료하고, 정월 내 직원의 퇴사시 신규 채용은 불가하며 '17년 말까지 자연감소 유도
- '16~'17년 2년간 정월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별도 인건비 일시 지원
- 서비스 이관을 위한 지자체 내 여성청소년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

2장. 주요 개정사항

2-1. 청소년자활

2-2. 성과평가 도입

2-3. 운영지침

2-4. 광역센터 지정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도입

성과계약제 도입 및 격년제 평가 예정

- 계약주체는 보건복지부로 하고 지자체 재량 가산점(10%) 부여
- 격년제 평가 방식으로 3~4년 평균 60점을 최소 달성 성과로 설정
- '16년 성과계약제 도입에 따라 기존 삼진아웃제는 '15년 사업에 대한 '16년도 평가까지만 적용
- 지역자활센터 평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취소까지 가능 하도록 강화

2장. 주요 개정사항

2-1. 청소년자활

2-2. 성과평가 도입

2-3. 운영지침

2-4. 광역센터 지정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개정

경력산정 및 직급별 기준호봉

- 인정경력의 산정 및 호봉 승급은 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
- 직급별 기준 호봉은 2016년 신규 채용자부터 폐지

직원채용자격 기준표

- 학력제한 기준은 폐지하고 경력 및 자격 기준 강화
- (최소 승진연한) 1,2급으로 승진시 각 2년, 3~5급으로 승진시 각 1년

봉급월액표 간소화(직무, 정근, 자격, 교통, 식대 등 수당 포함)

병가·공가 및 기타 복무규정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

2장. 주요 개정사항

2-1. 청소년자활

2-2. 성과평가 도입

2-3. 운영지침

2-4. 광역센터 지정

광역자활센터 성과계약 구체화

실질적인 성과계약제 운영을 통한 광역자활센터 활성화 유도

- 시·도와 센터 간 성과계약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미달성시 기존 법인 외 지역 내 자활분야 전문 운영주체의 부재로 성과계약 실효성 문제 제기

중앙자활센터를 운영주체로 변경할 경우 절차 간소화

- 지정서 반납 및 성과계약 종료의 경우 시·도 의견서 제출만으로 변경 가능
- (지역인사 채용) 중앙자활센터가 운영주체로 기능하는 광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채용은 해당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며, 지역 인사 채용을 원칙으로 함

3장. 한국자활연수원

3-1. 개원

3-2. 2015 주요성과

3-3. 2016 추진방향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 노인, 장애인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경제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한 자활사업 전문교육기관 (충북 충주시 소재)

'13.2~'14.10월 시공, '15.4월 개원



3장. 한국자활연수원

3-1. 개원

3-2. 2015 주요성과

3-3. 2016 추진방향

2015년 주요성과

메르스 여파 등을 극복한 교육목표 달성

- 하반기 적극적 교육유치 및 관련 기관 긴밀한 협업 등으로 위기 극복, 성과목표 초과달성(목표인원 6,000명 대비 107.5%)

교육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성, 시설예산확보 등 기반구축

- 운영위원회(중앙자활센터, 협회, 학계 8명) 구성 및 2회 운영
- 교육협의체(중앙·광역자활센터, 협회 등) 구성 및 3회 운영
- 2016년 신규교육과정 개발, 동영상 기초강의 등 연구사업 시범 실시
- 장애인편의, 생활관 바닥난방 등 시설개선 위한 예산 5.3억원 증액

3장. 한국자활연수원

3-1. 개원

3-2. 2015 주요성과

3-3. 2016 추진방향

2016년 사업 추진방향

교육관련 연구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

- 자활·자립지원분야 체계적 교육연구 계획 수립 및 연구 수행
- 현장 교육지원 자원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현장수요를 반영한 차별성 있는 교육운영

- 문제해결중심 교육 및 종사자 자격과정 개발 등 자활현장 역량 강화
- 자활센터 신규종사자, 센터장, 실장을 위한 직급별 핵심과정 도입

연수지원 체계화 및 지역사회협력 강화

- 연수원 인지도 제고 및 교육홍보를 위한 SNS 등 활성화
- 시설개선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Thank you
감사합니다



제1기 종사자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자활정보시스템 사용안내

중앙자활센터
류근철 차장

자활정보시스템 소개

2016.01



자활정보시스템 소개

순서

I 구축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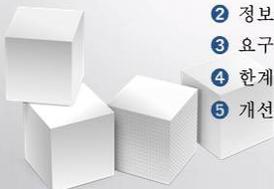
- ① 자활사업 관련 자금현황
- ② 정보시스템 현황
- ③ 요구사항
- ④ 한계 및 문제점
- ⑤ 개선방향

II 주요추진내용

- ① 구축개요
- ② 추진경과
- ③ 정보시스템 변화
- ④ 시스템 구성
- ⑤ 운영인프라
- ⑥ 연계정보
- ⑦ 기대효과

III 사업관리

- ① '15년 추진현황
- ② '16년 추진계획
- ③ 시범운영 정보흐름
- ④ 협조사항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통하여
자활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구축배경

- ① 자활사업 관련 자금현황
- ② 정보시스템 현황
- ③ 요구사항
- ④ 한계 및 문제점
- ⑤ 개선방향

01 자활사업 관련 자금현황

1. 구축배경

4,481억

자활근로 사업, 자활지원센터 운영, 자활장려금, 자산형성지원, 근로능력평가 등 자활지원 예산 총액은 4,481억원('15.국비 기준)

709억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발생시키는 매출액 약 709억원('13. 기준)

3,400억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는 자활기금 보유액은 약 3,400억원('13. 기준)

02 정보시스템 현황

I. 구축배경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09년부터 약11종의 민간 사회복지분야 수행기관의 행정업무(회계, 인사, 총무, 이력 등)를 위하여 사회복지정보원에서 구축하여 운영



II. 구축배경

<자활사업 성과관리시스템>

'09년부터 지역자활센터 평가의 수월성과 이를 기반한 통계생산을 위하여 중앙자활센터에서 구축·운영하고 있음



<자활기업정보시스템>

자활기업의 주기적 사업성과를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 '15년 현재 1,202개의 자활기업이 등록(949개 주기적 성과등록)



중앙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4~

03 요구사항

I. 구축배경

편의성

사례관리

매출관리

참여자

수행기관

자활기금

모니터링

사업관리

정책연동

종사자

컨설팅

사업통계

실시간 현황

업무지원

중앙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5~

04 한계 및 문제점

1. 구축배경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통계의 신뢰성
- 매출관리의 투명성
- 시의성, 정책 연동성

자활사업 성과관리시스템

- 통계의 범위
- 통계생산의 주기
- 통계의 적시성

자활기업정보시스템

- 정보입력 당위성
- 통계의 신뢰성
- 통계의 범위

76
중영지원센터 자활정보시스템
-6-

05 개선방향

1. 구축배경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

통합된 정보

분절화된 자활 관련 정보를 통합된 시스템 내에서 조망 가능하도록 함

신뢰성 있는 통계

참여자, 사업단, 이력, 사례관리, 매출 등 신뢰성 있는 통계 산출

유효한 컨설팅

주기적인 정보확인을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 조기 제공

중영지원센터 자활정보시스템
-7-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통하여 자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II 주요추진내용

- ① 구축개요
- ② 추진경과
- ③ 정보시스템 변화
- ④ 시스템 구성
- ⑤ 운영인프라
- ⑥ 연계정보
- ⑦ 기대효과


-8-

01 구축개요

II. 주요추진내용

 사업명	자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15년 8월 27일 ~ '16년1월 31일
 사업비	금 오억구천팔백사십만원 (₩598,400,000)
 사업수행	보건복지부, (재)중앙자활센터

사업목적

- ✓ 자활사업수행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업무효율성 증대
- ✓ 자동화된 매출정산을 통하여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의 투명한 관리와 정확성 확보
- ✓ 신뢰성 있는 자활사업 통계정보 생산
- ✓ 자활사업 전체 현황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목표와 일치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주요사업범위

- ✓ 자활정보시스템 구축
 - 자활사업수행기관 자활사업관리
 -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관리
- ✓ 자활사업 정보시스템간 연계기능 구축
 - 행복e음과의 정보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의 연계


-9-

02 추진경과

II. 주요추진내용

일자	주요추진내용
'15.02-03	자활정보시스템 구축 관련과 협의 (복지정보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등)
'15.04	정보자원 통합사업(G클라우드) 전산인프라 부분설계 (정부통합전산센터)
'15.05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국가정보원)
'15.06	EA(Enterprise Architectuer) 정보화사업 자체검토 (정보화담당관)
'15.08	자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계약 (서울지방조달청, ㈜아인스텍)
'15.10	자활정보시스템 전산관리 사업자 계약 (관리법인 프라임에이앤씨)
'15.09~'16.0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분석, 자활정보시스템 설계, 개발
'15.12	중간(10월, 최종(12월) 전산관리 수행
'15.12	홈페이지 취약점점검 (통합전산센터)
'15.12	자활정보시스템 완료보고 및 사용자 교육 (3회)
'16.01	시범운영 (~'1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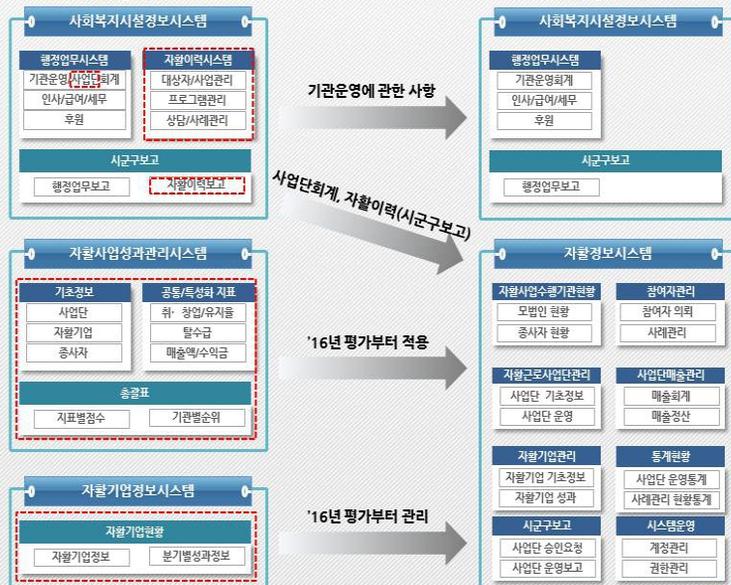


03 정보시스템 변화

II. 주요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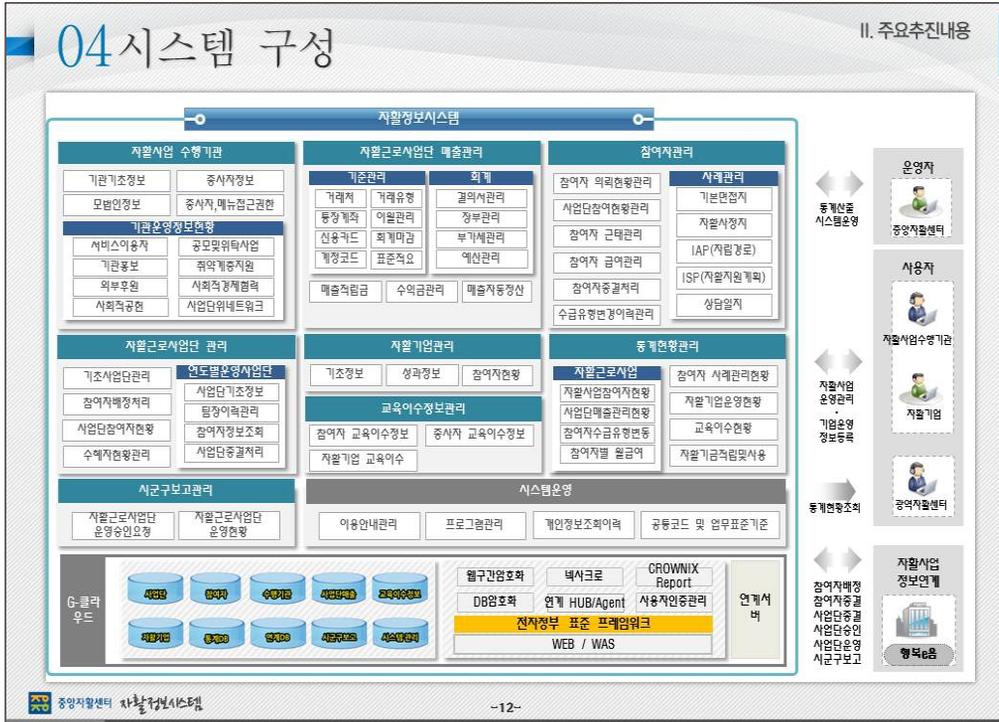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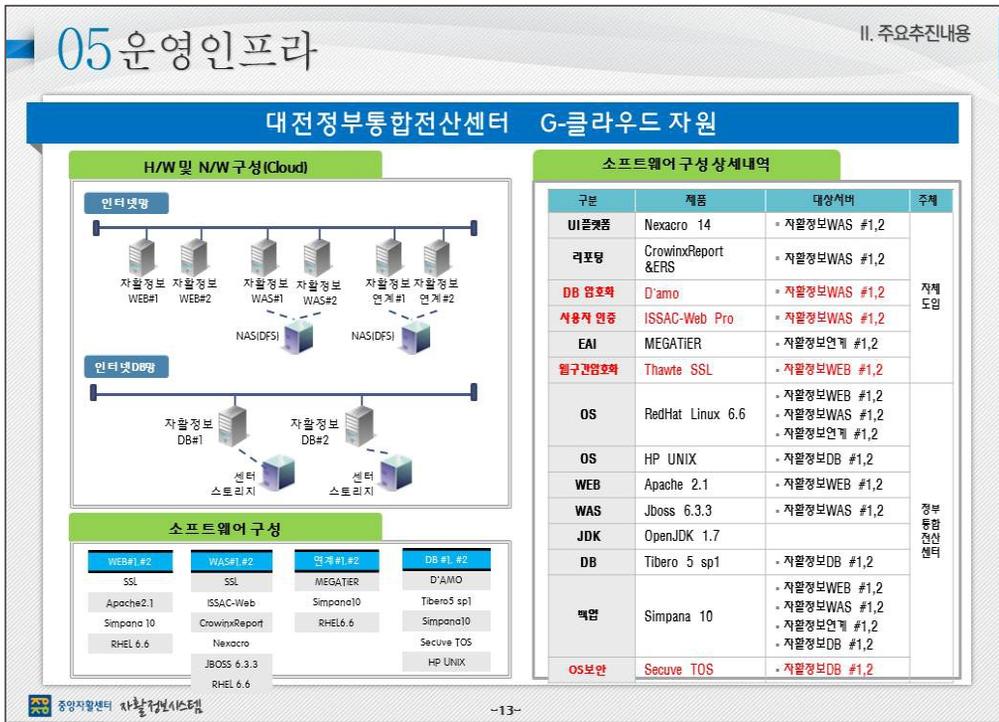
04 시스템 구성

II. 주요추진내용



05 운영인프라

II. 주요추진내용



06 연계정보

II. 주요추진내용

▶ 자활정보시스템-행복e음 간 자활사업관련 정보연계 내역

시스템연계인터페이스	자활정보시스템	연계목적	연계주요항목
자활사업단정보	제공	자활사업단운영 승인신청	지역자활센터시설번호 복지시설종류코드
자활사업단승인정보	이용	자활사업단운영 승인 및 반려	사업단승인결과구분
자활사업운영정보	제공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관리현황 자활사업참여자 이행상태정보	지역자활센터시설번호 지역자활센터주체ID
자활참여자배정정보	이용	자활사업참여자 배정의뢰	참여자의뢰정보
배정상태변경정보	이용	자활사업참여자 재배정 의뢰	의뢰상태변경정보
자활사업참여자배정정보	제공	참여자별 사업단 참여정보	지역자활센터코드 지역자활센터주체ID
자활참여자이행결과처리정보	이용	자활사업참여자 이행상태 정보	지역자활센터시설번호 시군구판단이행상태코드
시설인허가정보	이용	신규지역자활센터 인증 및 확인	시설인허가정보

중앙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14-

07 기대효과

II. 주요추진내용

사업단 매출관리

- 자활사업단 매출규모 및 매출관리 흐름 투명화
- 자활근로사업단에 특화된 회계/매출관리, 매출자동정산



참여자 사례관리

- 정보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가능



사용자 업무효율 향상

- 수기 통계 보고를 자동화하여 업무부담 완화
- 자활사업 성과평가를 대비하여 연중 지속적인 관리가능
- 사업현황 실시간 통계정보 활용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사용자 편의성

- 자활사업관련 업무시스템을 통합·일원화
- 통합UI를 적용하여 쉽고 직관적인 화면기능 구성
-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시스템 활용 (웹브라우저)



통계정보생산

- 신뢰성 있는 자활통계 산출하여 성과관리 정보로 활용
- 사용 권한별 통계제공 영역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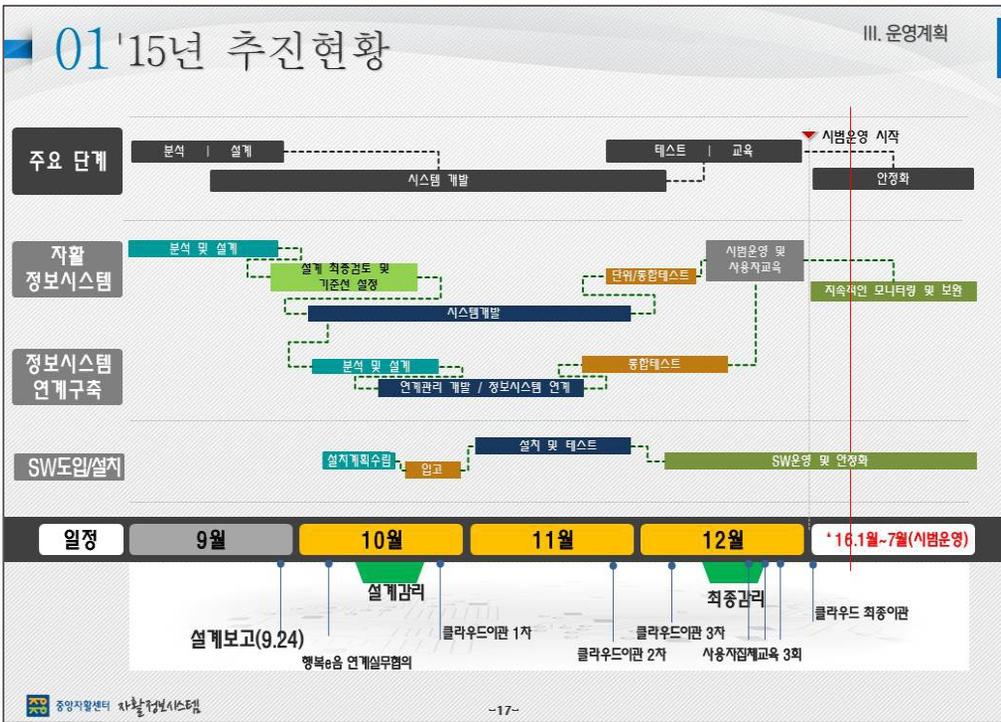
중앙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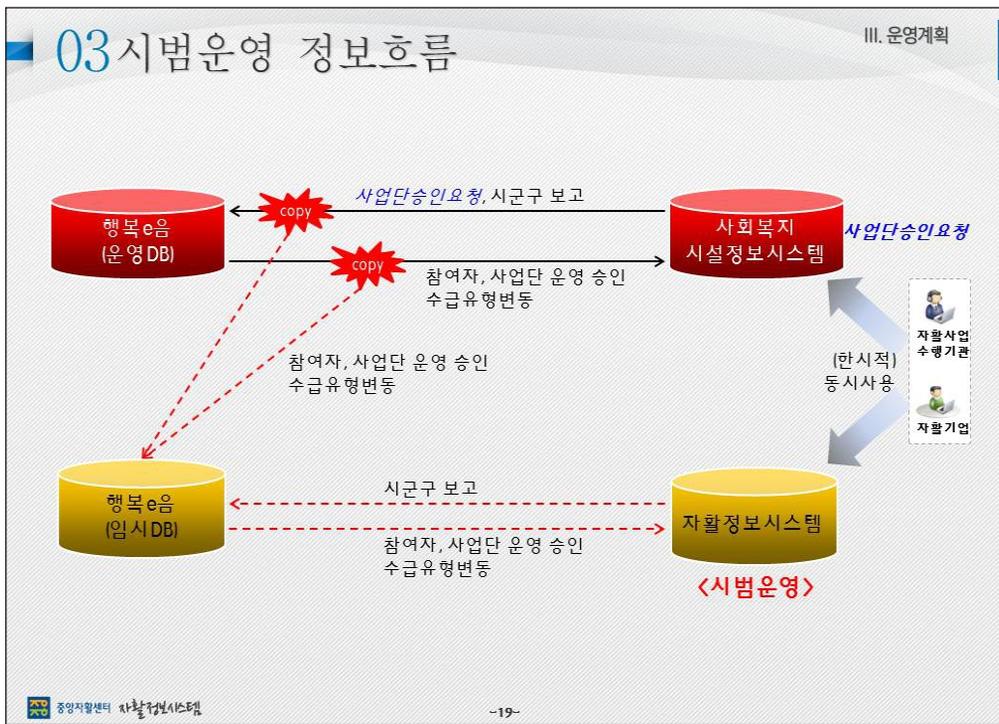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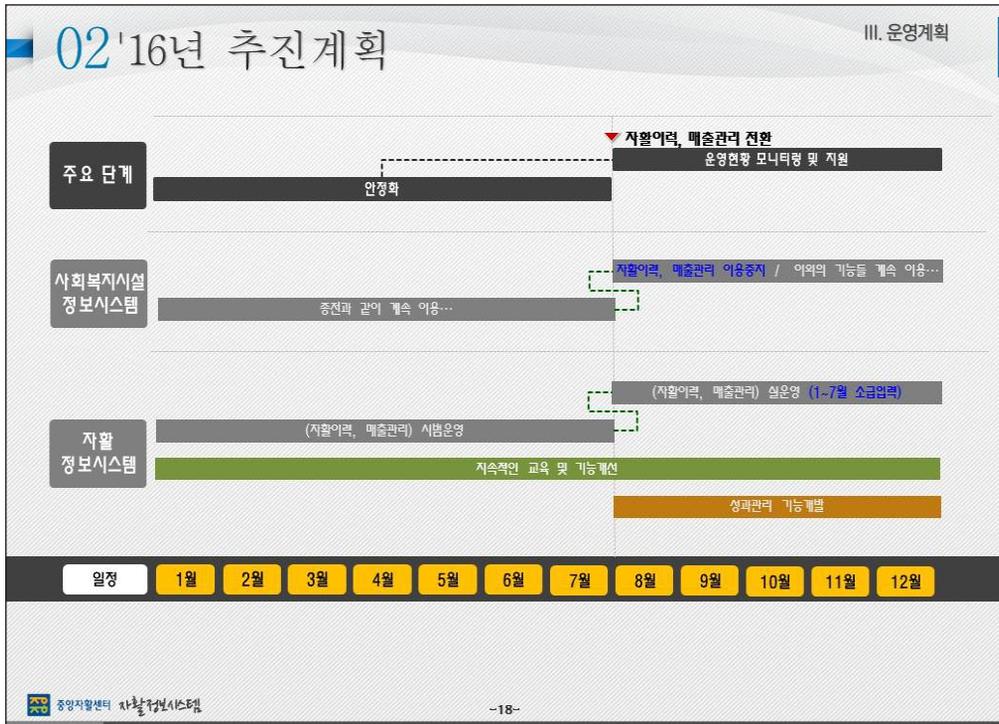
-15-

안정적인
자활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III 운영계획

- ① '15년 추진현황
- ② '16년 추진계획
- ③ 시범운영 정보흐름
- ④ 협조사항





04 협조사항 III. 운영계획

적극적 이용

편의성

자활정보시스템 안정화

사용자 교육 참여

효율성

자문단 참여

체계화

중앙재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20~





제1기 종사자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인별 동기부여 전략

글로벌NPL코칭
권종희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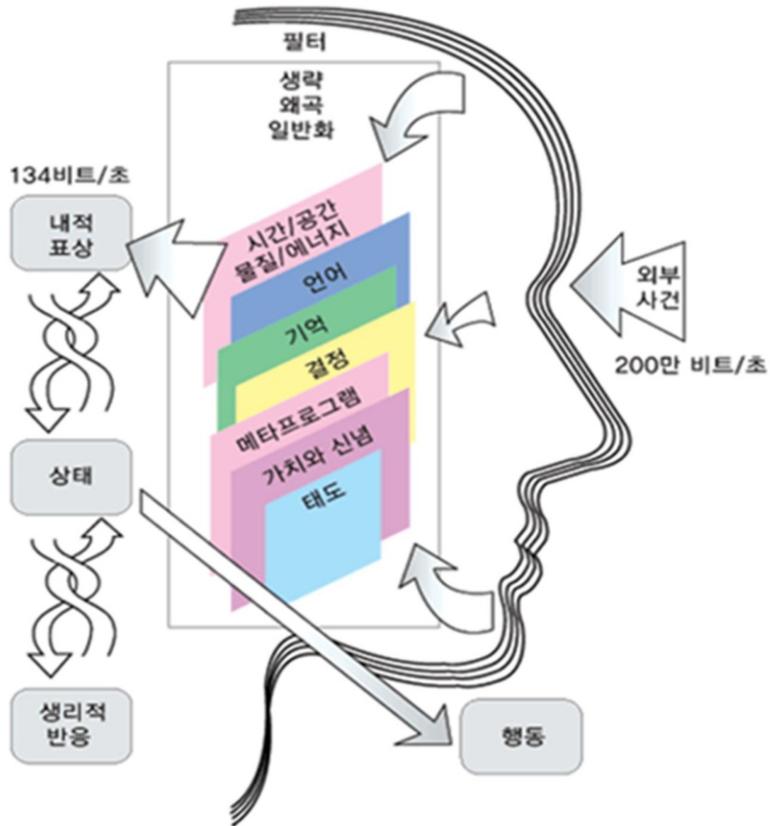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인별 동기부여 전략



국제공인 전문교육기관
글로벌NLP코칭아카데미
Global NLP Coaching Academy

대표 권종희

제 1편. 동기 부여 모델



제 2편. 동기 부여 전략의 원리

1, 너가 보는 세계



당신이 지금 화면에서 본 것을 똑같이 그리세요.

2. 언어와 마음



1) 모양:

3)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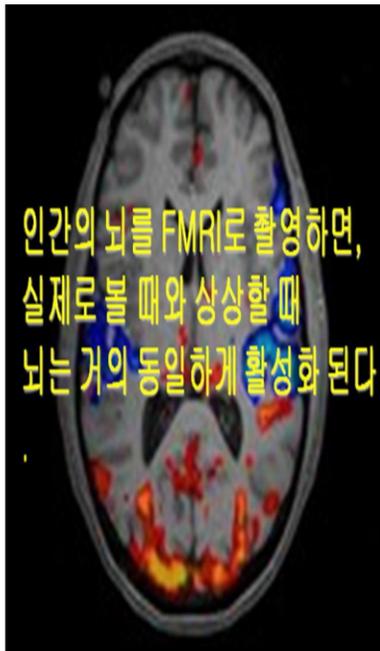
5) 맛 :

2) 색깔:

4) 향기:

6)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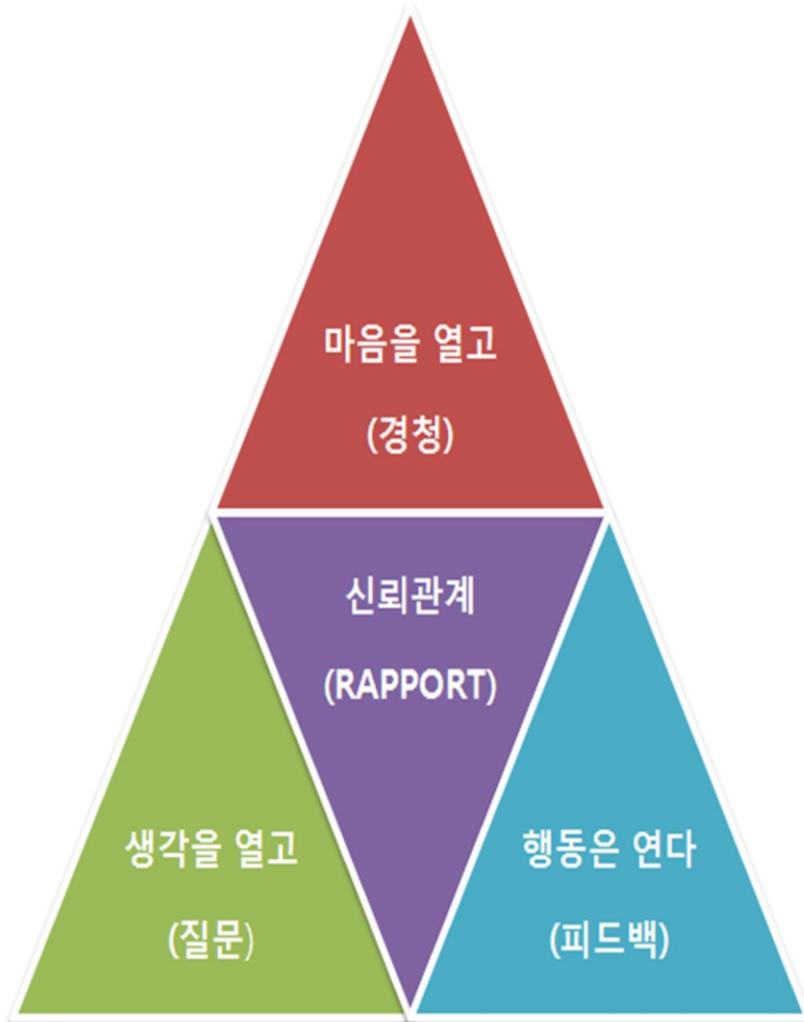
3. 몸과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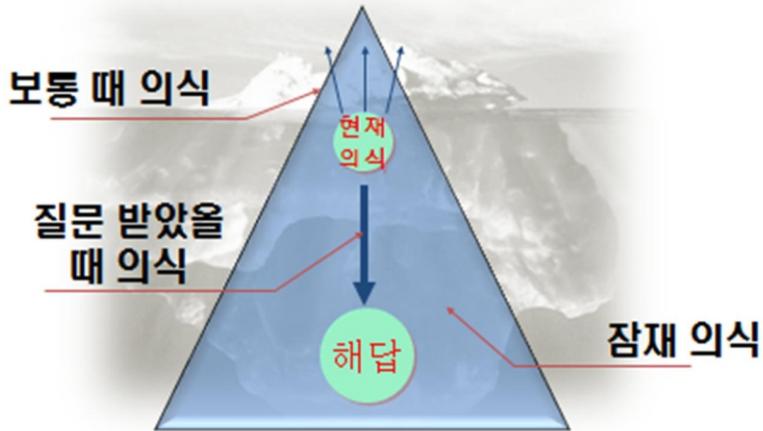
제 3편: 소통을 위한 신뢰 형성 방법

소통을 통한 신뢰 형성의 방법

경청, 질문, 피드백



제 4편: 의식을 확장하는 질문 법



☞ 질문은 외부를 향해 있던 의식의 화살을 내부 잠재의식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백



과거 질문 VS 미래질문

과거질문

“도대체 왜 그걸 하지 않았죠? [과거형 단어 포함]



미래질문

“다시 시도해 본다면, 완수해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시도해 보면 좋을까요? [미래형 단어 포함]

☞ 가능성은 미래에 살고 있다. 해답은 미래에 있다.

부정 질문 VS 긍정질문

부정질문

“어째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죠?
[부정형 단어 포함]



긍정질문

“어떻게 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긍정형 단어 포함]

☞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의식을 돌려라!

제 5편. 동기부여를 위한 대화(communication)의 전략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대인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단계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진행해 보자.

첫째, 관찰.

어떤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곧 보고 듣고 접촉한 것들들 어떤 평가와도 뒤섞이지 않고 관찰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관찰과 평가가 섞이면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항감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느낌.

그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한다. 아픔, 무서움, 기쁨, 즐거움, 짜증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셋째, 욕구.

자신이 포착한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직장동료에게 이 세 요소를 다 넣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문에 오타가 3곳에서 보이네요. 저는 우리 청이 좀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 인식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되요. 그래서 우리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공문서에 오타가 보이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요소인 구체적인 부탁 사항을 말한다. 간접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고, 행동 요청으로 “출력 전에 오타 점검을 한 번 더 해 줄 수 있겠어요?”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이 네 번째 요소는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곧 나는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탁하는가. 당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며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탁하는가. 이 대화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연결되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화의 4단계 모델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상대방의 말을 비난(비판)이
아닌 공감적으로 들을 때

관찰 (Observing)

나의 느낌을 일으키는 상황을 있
는 그대로 관찰하기

상대의 느낌을 일으키는 상황
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내가 ~을(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

“당신이 ~을(보거나, 듣거나) 했
을때”

느낌 (Feeling)

관찰에 대한 나의 느낌

관찰에 대한 상대의 느낌

“나는 ~게 느낀다.”

“당신은 ~게 느끼십니까?”

욕구/필요 (Need)

나의 느낌 뒤에 있는 욕구/필요

상대의 느낌 뒤에 있는 욕구/필요

“나는 ~이 필요(원, 중요)하기 때
문에...”

“당신은 ~이 필요(원, 중요)하기 때
문에...”

부탁/요청(Request)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
요청

상대가 원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부
탁/요청

“나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내가 ~하기를 바라십니
까? “

1 단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크라슈나무르트는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을 하는 것이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라고 한 적이 있다. 이 관찰을 통한 표현은 고정적인 일반화를 피하는 진행과정의 언어로 때와 맥락에 맞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원칙을 알아보겠다.

원칙 ① 캡코더를 찍듯이 말하라.

(구체적인 행위 혹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언급하라.)

“당신이 _____ 라고 말한 것을 들었(보았)을 때”

“당신은 제 의견과는 무조건 반대시군요.”(X)

→“최근에 제가 제안한 세 가지를 다 하기 싫다고 했어요.”(O)

원칙 ② 판단보다는 판단을 가져온 자극을 말하라.

“___가 나를 무시했다”(X) →“___가 내 질문에 대답을 안했다”(O)

원칙 ③ 주의하십시오!! “정의내리기”와“낙인찍기”

“그녀는 너무 책임감도 없고 게을러.”(X)

→“그녀는 1주일에 최소한 세 번은 지각을 해.”(O)

원칙 ④ 구체적인 말이나 예를 직접 인용하라!

“그는 공무원을 업신여긴다.”(X)

→ “그는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공무원이라고 설치지말라’고 했다”(O)

원칙 ⑤ 긍정적인 표현(착하다, 천사 같다. 장녀 같다 등)도

주관적인 평가임을 조심하자.

원칙 ⑥ 언제나, 절대로, 결코, -한 적이 있다(없다). -할 때마다 와 같은

표현은 가급적 삼간다.

2 단계: 느낌을 표현하라.

① 우리 자신이 그리고 상대방이 품고 있는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불행히도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나쁜 것”이라고 배워 왔기 때문에 인간 존재로서의 어긋난 균형을 경험해 왔다. 화는 성실이 나쁜 사람이나 내는 거야, 사나이는 울면 안 돼, 사랑은 애들이나 하는 거야, 성욕을 느끼는 건 수치스러워 등.

② 성숙한 인간이란 자신이 지닌 감정 그대로를 모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나 지니고 있는 모든 감정을 존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풍선의 한 쪽을 꼭 눌러 한 쪽으로 압력이 기울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압력을 가하고 있던 부분을 놓아 주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듯이 인간도 어떠한 감정이든 그 자체로서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 줄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다.

④ 느낌에는 좋고 나쁨도, 옳고 그름도, 윤리성도, 도덕성, 판단기준도 없다. 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고, 바라며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는 긍정적인 느낌이 들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두 느낌 모두 우리에게 중요하다.

⑤ 조심해야하는 것은 정말로 느낌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평가, 판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무시 받은 기분, 배신당한 기분, 이용당한 기분, 버림받은 기분, 오해받은 기분, 강요당한 기분, 거절당한 기분, 억압당하는 기분, 공격 받는 기분 등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너는 나에게 분명 이리이리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느낌이 아니다. 다음의 다양한 감정의 표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라.

3 단계: NEED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근본적인 선함이 있다는 참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이 선함에 기초한 NEED가 바로 창조적인 관계로 이끌어 주는 핵심이다.

한 예로, 우리가 언어로 혹은 다른 형태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다음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첫 번째,

비난과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당신은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개인적으로 듣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아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난 정말 너무 이기적인 게 맞아!” 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탓하는 것으로 이러한 선택은 우리를 죄의식, 수치감, 그리고 우울한 느낌 쪽으로 기울게 만들기 때문에 자존심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② 두 번째,

말하는 상대방을 나무라는 경우로, 당신은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에 대한 반응을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나는 당신이 뭘 원하든지 항상 배려해 주었는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라고 반박할 수 있다. 우리가 상대방의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분노의 감정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③ 세 번째,

자신의 느낌과 NEED에 의식의 불을 비추는 것이다. “ 당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내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당신이 알아주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느낌

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현재의 상처받은 느낌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바라는 나의 선한 의도와 NEED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④ 마지막 네 번째 선택은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우리의 의식의 불을 비추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 당신이 원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실망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세 번째에 “나는 당신이 나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랐어.”와 네 번째의 “너는 내가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기 때문에...”의 부분을 우리는 NEED (욕구, 필요, 원함, 바람, 가치관, 기대, 희망)라고 부르며 인간 내면의 존재하는 고귀한 인간의 선한 의도성이라고 한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돌려서 표현하는 비극적 표현이다. 어떤 사람이 “넌 나를 절대 이해 못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말의 진정한 뜻은 진심으로 이해받기를 바라며 자신의 깊은 NEED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방어적 표현임을 이제 짐작할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만 익숙하여 외투가 의자위에 놓여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게으르다고 판단하기 쉽고 직장 동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에 두었던 초점에서 벗어나 탓하기보다 자신들이 서로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두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을 느낀다.” 와
“당신은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을 느끼신 거죠?”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할 수 있다.**

- ① “오타 좀 내지마” 대신에
- ② “나는 우리 청이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의 공문에 오타가 나오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 ③ “팀장님이 약속을 지키자 않아 내 사생활이 엉망이 됐다.” 대신에
- ④ “나는 어머니를 방문하려고 온가족이 계획을 하고 주말을 고대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 ⑤ “ 그 사람이 약속을 취소해서 정말 짜증나.” 대신에
- ⑥ “ 그 사람이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었으면 했어. 그 사람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어 너무 짜증이 나.”
- ⑦ “네가 어제 저녁에 오지 않아서 너무 실망했어. “ 대신에
- ⑧ “ 걱정거리가 있어서 너와 상의하고 싶었는데, 네가 오지 않아서 많이 실망했어.”와 바꾼다면 어떨까요?

①③⑤⑦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책임을 모두 상대방에게 돌리면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떠넘긴 반면 ②④⑥⑧은 자신이 바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충족되지 않았음과 자신의 느낌 뒤에 숨은 자신의 생각을 인정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인다. 이 대화법은 ‘나’에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곧 자신의 어떤 욕구나 기대, 희망, 가치관이 충족되지 못했는가를 확인하도록 권한다. 우리가 자신의 욕구와 느낌을 잘 연결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길을 더욱 환하게 밝혀주는 것임을 보게 된다.

어떠한가? 우리 느낌을 좀 더 직접적으로 NEED와 연결하여 말하는 모험! 도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험이지 않은가?

4 단계 . 긍정적이고 명확한 부탁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 분석, 비난하거나 진단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며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제 대화 모델의 4번째 요소인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원리 ① 긍정적인 언어로 부탁하라.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란색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파란 자동차가 그려지시나요? 자, 이번에는 “빨간 장미를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빨간 장미가 여전히 머리에 그려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째서 빨간 장미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부정명령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빨간 장미를 생각하라는 말이나 빨간 장미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뇌에게 있어서 동일한 명령어가 된다. 원하지 않는 것(부정적인 부탁)을 멈추고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긍정적인 부탁)을 부탁하는 연습을 해보자.

“회의 시간에 늦지 좀 마세요.”대신에
“회의 시간 10분전에 와 주시겠어요?”

원리 ②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한 직장상사가 직원에게 긍정적인 단어를 넣어 이렇게 요청했다. “나는 김 대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가? 책임감…….너무 중요하지 않으나 말일세.”

만일 여러분이 이 상황의 김 대리라면 어떤 느낌이 들것 같은가?

첫 번째 예상되는 생각이 ‘내가 책임감이 없나 보군’혹은, ‘내가 뭘 그렇게 책임감이 없단 말이야?’ 분명 긍정적으로 표현했음에도 그 긍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면 상대방에게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전해지고 내면에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만약 이 상사가 이렇게 표현했다면 어떨까요? “나는 김 대리가 회의 때

빔 프로젝트를 써서 설명을 잘 해 주고 있는데, 문서를 출력해서 서면으로 주었으면 더 좋겠어. 회의의 주 내용을 모두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김 대리가 상사의 부탁(책임감)을 이해하고 이행하기란 보다 쉬워질 뿐 아니라 상사의 기대도 보다 쉽게 채워지게 될 것이다.

“내 사생활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대신에

“내 컴퓨터를 쓰실 때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제 회의 때 제가 낸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고쳤으면 하는지 말해주면 좋겠습니다.”로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탁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추상적이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때이다.

원리 ③ 부탁인지 명령인지 구별해야 한다.

여러분이 한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이 부탁한 일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에서 비난하고 있다면, 100%입니다. 당신은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부탁에 응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강요이기 때문이다.

조직 내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부탁의 표현은 바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말을 피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부탁하는 것, 이것을 마음에 두십시오.

참고 도서

Marshall B. Rosenberg (2011). Nonviolent Communication. 캐서린 한 (역), 비폭력 대화. 서울 : 바오출판사



개인별 동기부여 치료 모델

1 단계: 초 대

♥ 부모 역할자

나는 너의 엄마(아빠)란다. 내 딸(아들)로 사는 것이 어땠니?
(만약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부재했다면 "엄마/아빠 없이 사는 것은 어땠니?)

♥ 아 이 역할자

엄마/아빠와 사는 것은... (또는 "엄마/아빠 없이 사는 것은...")

♥ 부모 역할자

충분히 이해가되는구나. 그랬겠구나~!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준다.)

2 단계: 경험을 심화한다

♥ 부모 역할자

나에게 받은 가장 깊은 상처가 있다면 어떤 것이니?

♥ 아 이 역할자

엄마/아빠가 많은 부분을 잘해주셨어요. 그래도 상처가 된 것은

♥ 부모 역할자

너는 그런 상처를 혼자 이겨내고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했니?

♥ 아 이 역할자

아이로서 상처에 이겨내고 대처하기 위해서 한 일을 설명한다.

♥ 부모 역할자-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준다.

3 단계: 욕구를 파악하기

♥ 부모 역할자

엄마/아빠로서 너에게 주지 못한 것 중에서 네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뭐니?

♥ 아이 역할자

제가 엄마/아빠에게 가장 필요로하고 바랬던 것은...

♥ 부모 역할자

네가 ...느끼고 ...원한 것은 상황으로 보았을 때 말이 되는구나.
또는 나는 너의 상처와 너의 절박했던 필요를 이해한다. 왜냐면 ...

4 단계: 역할 벗기

파트너 (부모 역할자)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엄마/아빠가 아닙니다. 파트너로서 저는 그런 상황 하에서 당신이 ...느끼고 ...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당화) 당신이 ...느꼈을 것 같네요.

(공감) 저를 믿고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대화가 완결되면 역할을 바꾼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KOHI 블로그	‘하이나래’ http://blog.naver.com/kohipr
KOHI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ohipage
KOHI 트위터	http://twitter.com/kohitwt
한국자활연수원 홈페이지	http://www.kotiss.or.kr
한국자활연수원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HIJAHWAL

제1기 종사자 현장맞춤형 기획과정 “2016년 자활종사자 자활지원 정책교육”

2016년 1월 26일 발행

발행인 : 원장 류호영

발행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전화 : 043-710-9000 / 팩스 043)710-9009, 9139

홈페이지 : www.kohi.or.kr

한국자활연수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안심1길 143

전화 : 043)841-3700 / 팩스 : 043)841-3769

본 교재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